



(사)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2023년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문화예술 활성화 연구회
서대문구 생활체육·문화예술 정책개발 연구
최종보고서



서대문구의회

제출문

서대문구의회 귀하

본 보고서를 「서대문구 생활체육·문화예술 정책개발 연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 본 보고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서대문구의회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3년 11월

참 여 연 구 진

책 임 연 구 원	박 현 승 (사)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정책사업팀장
공 동 연 구 원	양 효 석 (사)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사무처장
	박 상 언 미래콘텐츠문화연구소 대표
연 구 보 조 원	서 지 현 (사)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정책사업팀 주임
	명 선 희 (사)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정책사업팀 주임
	박 이 슬 (사)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정책사업팀 사원



(사)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목 차

I. 연구개요

- 1. 연구 배경 및 목적 10
- 2. 연구 범위와 내용 12
- 3. 연구 수행 절차 14

II. 서대문구 여건 분석

- 1. 서대문구 기본 현황 18
- 2. 서대문구 주요 특징 30
- 3. 소결 41

III. 서대문구 생활체육·문화예술 관련 현황

- 1. 서대문구 생활체육 관련 현황 44
- 2. 서대문구 문화예술 관련 현황 48
- 3. 소결 53

IV. 정책 환경 분석

- 1. 체육 관련 법규 56
- 2. 문화예술 관련 법규 64
- 3. 정부와 지자체의 생활체육·문화예술 운영 방향 76
- 4. 시사점 81

V. 주요 사례분석

1. 서울특별시 22개 자치구 현황 분석	88
2. 체육 부문 사례	97
3. 문화예술 부문 사례	101
4. 서울특별시 자치구 문화재단의 유형 분석	112

VI. 의견 수렴 결과

1. 의견수렴 주요 결과	120
2. 소결	127

VII. 서대문구 생활체육·문화예술 정책 제안

1. 종합 분석	130
2. 기본방향 및 주요 고려 요소	132
3. 정책 제언	136
4. 결 론	146

참고문헌	148
------------	-----

부록(설문지)	149
---------------	-----

표 목차

<표 1> 서울시 기초자치구별 인구 순위.....	25
<표 2> 서대문구 세대 수 및 인구수.....	26
<표 3> 서대문구 연령별 인구수(비율).....	28
<표 4> 서대문구 경제활동 인구 현황.....	33
<표 5> 연령별 취업자 및 고용률(15세 이상) 현황.....	34
<표 6> 연령별 취업자 현황.....	35
<표 7> 연도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35
<표 8> 사업체 종사자 규모별 현황.....	35
<표 9> 서대문구 동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수 및 수급자 수.....	36
<표 10> 서대문구 교육시설 수.....	38
<표 11> 서대문구 건강 지수.....	40
<표 12> 서대문구 연도별 체육 예산 변화.....	45
<표 13> 서대문구 공공 체육시설 현황.....	46
<표 14> 서대문구 생활체육 동호회 수.....	47
<표 15> 서대문구 연도별 체육 예산 변화.....	49
<표 16> 서대문구 문화재 수.....	49
<표 17> 서대문구 도서관 현황.....	50
<표 18> 서대문구 문화예술 시설 수.....	50
<표 19> 「국민체육진흥법」 주요내용.....	57
<표 20> 「생활체육진흥법」 주요내용.....	58
<표 21> 「문화기본법」 주요내용.....	65
<표 22> 「문화예술진흥법」 주요내용.....	66
<표 23> 「지역문화진흥법」 주요내용.....	68
<표 2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69
<표 25>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주요내용.....	71
<표 26>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71
<표 27>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주요내용.....	71
<표 28>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주요내용.....	72
<표 29>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주요내용.....	73
<표 30> 서대문구 생활체육·문화예술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80
<표 31> 서울특별시 22개 자치구의 체육 예산.....	89
<표 32> 서울특별시 22개 자치구의 문화예술 예산.....	92
<표 33>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문화예술 예산 대비 문화재단 예산 비율.....	94
<표 34> 전주문화재단 사업의 경제효과.....	96
<표 35> 사업유형별 예산을 Factor Analysis를 통해 분석한 결과.....	112
<표 36> 재단여건과 사업유형요인의 상관관계.....	113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 수행 계획	14
[그림 2] 서대문구 위치 및 전철 노선도	19
[그림 3] 연희 숲속 쉼터	22
[그림 4] 안산 자락길 쉼터	22
[그림 5] 안산 자락길	22
[그림 6] 안산 봉수대	22
[그림 7] 홍제천 징검다리	24
[그림 8] 홍제천 인공폭포	24
[그림 9] 생명으로 거듭나는 홍제천	24
[그림 10] 서대문구 연도별 인구변화 추이	27
[그림 11] 서대문구 연령별 인구수	28
[그림 12] 서대문구 동별 면적	29
[그림 13] 서대문구 역사문화자원	30
[그림 14] 서대문구 권역 구분	32
[그림 15] 서대문구 연도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수 및 수급자 수	36
[그림 16] 서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수	37
[그림 17] 서대문구 전체 예산 대비 체육 예산 비율 변화	44
[그림 18] 서대문구 전체 예산 대비 문화예술 예산 비율 변화	48
[그림 19] 홍제천 인공폭포를 다룬 유튜브 숏츠	51
[그림 20] 벚꽃축제	52
[그림 21]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축제	52
[그림 22] 어린이 축제	52
[그림 23] 서대문 독립축제	52
[그림 24] 신촌 글로벌 대학문화 축제	52
[그림 25] 신촌 카운트다운 콘서트	52
[그림 26] 굴레방 나눔 한마당 축제	52
[그림 27] 서울특별시 22개 자치구와 서대문구의 전체 예산 대비 체육 예산 비율비교	90
[그림 28] 양구군체육회 조직도	97
[그림 29] 양구군 스포츠재단 조직도	99
[그림 30] 성동문화재단 조직도	102
[그림 31] 마포문화재단 조직도	105
[그림 32] 강북문화재단 조직도	109

제 1 장

연구개요

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절 연구 범위와 내용

3절 연구 수행 절차

I . 연구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 (추진근거) 문화기본권 보장 및 문화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지자체의 책무

- ※ 『문화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자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문화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문화향유격차 완화 노력 필요) 국민의 소득수준·지역별·연령별로 문화향유 수준의 격차가 존재하며, 격차 완료를 통한 국민 삶의 질 제고 필요

- ※ 연령이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지역 규모가 클수록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위한 격차 해소 노력 필요(2021년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 지역문화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 및 지역중심 문화거버넌스 확립 등 정부 노력 지속(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 ※ 국민 기본권으로서의 문화권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지역 기초 사회·문화 인프라’ 개념 정립 및 사회·문화 국가최저기준 마련 노력(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 2022. 4. 27.)

- ☐ (지역특성 고려) 서대문구의 독특한 역사·문화·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개발이 필요
- ☐ (삶의 질 향상)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활동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건강한 지역 사회 형성에 기여하므로, 이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개발이 요구됨

나. 연구 목적

- ☐ 서대문구의 생활체육·문화예술의 전반적 실태 파악을 통해 정책의 방향성을 확립하고 관련 과제 및 정책 수립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2. 연구 범위와 내용

가. 공간적 범위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구역 전역

나. 시간적 범위

- ☐ 2023년 7월 ~ 2023년 11월

다. 연구 목표

- ☐ 서대문구 생활체육·문화예술 생태계에 대한 분석과 지역 생활체육·문화예술인 및 전문가, 전문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서대문구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구현할 수 있는 전략적 시사점 도출
- ☐ 국내 생활체육·문화예술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여 주민을 위한 실질적 생활체육·문화예술을 실현할 수 있는 로드맵 제시

라. 내용적 범위

- ☐ 서대문구의 생활체육·문화예술 자원의 실태 파악 및 진단
- ☐ 서대문구 구민의 생활체육·문화예술 관련 수요조사 및 분석
- ☐ 국내외 우수 사례 연구 및 시사점 도출
- ☐ 서대문구 생활체육·문화예술 수준 향상을 위한 전략도출 및 정책과제 수립

1) 서대문구의 생활체육·문화예술 자원의 실태 파악 및 진단

☐ 서대문구 생활체육·문화예술 각 분야별 자원 현황파악을 통한 권역별 생활체육·문화예술 자원 특징 파악을 통한 기초조사 및 환경분석 실시

○ 서대문구 생활체육·문화예술 각 분야별 자원 현황

○ 서대문구 권역별 생활체육·문화예술 자원 특징 파악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환경분석 및 기초조사 실시

2) 서대문구 구민의 생활체육·문화예술 관련 요구 조사 및 분석

☐ 구민, 정책 관계자 및 실무자 대상 FGI를 통한 의견 수렴과 다양한 조사방법을 통해 서대문구에 대한 요구 분석 실시

○ 구민 및 정책 관계자 대상 FGI를 통한 의견 수렴

○ 권역별 구민 요구 분석 및 실무자 의견 수렴

○ 다양한 조사방법론 기술을 활용한 양적·질적 요구분석 실시

3) 국내외 우수 사례 연구 및 시사점 도출

☐ 타 지역 및 해외의 우수 사례를 참고하여 서대문구 구민의 생활체육·문화예술 관련 요구에 맞는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4) 서대문구 생활체육·문화예술 수준 향상을 위한 전략도출 및 정책 과제 수립

☐ 서대문구 맞춤형 생활체육·문화예술 융합 플랫폼 구축 방향을 제시하고 서대문구 현황·실태분석 기반 지역특화 전략 및 정책과제 도출

3. 연구 수행 절차

가. 연구 수행 계획

- 본 연구는 「연구 기초자료 입수 및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FGI(정책관계자 및 실무자)」, 「현장조사 및 의견 수렴」의 프로세스를 통해 <서대문구 생활체육·문화예술 정책개발 연구>를 위한 「결론 및 제언」을 도출함

1	연구 기초자료 입수 및 분석	▶ 서대문구 현황 파악 및 보고서의 방향 설정
2	전문가 자문회의	▶ 서대문구 정책개발 관련 자문 ▶ 데이터 분석 및 방법론 자문
	FGI(정책관계자 및 실무자)	▶ 서대문 정책의 개선 방안 및 의견 청취
	현장조사 및 의견 수렴	▶ 지역 커뮤니티 및 동호회 대상 의견 청취
3	결론 및 제언	▶ 자료 분석 및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그림 1] 연구 수행 계획

나. 연구수행 방법

1) 기초자료 입수 및 분석

- 정책환경 및 내·외부 사례 분석

- 서대문구 생활체육·문화예술 정책수행을 위해 상위 법령 및 주요 조례 등을 파악을 통해 서대문구 정책의 방향성을 고찰
- 주요 사례 등의 분석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서대문구에 적용가능성의 확인 및 제안 사항에 대한 점검

□ 서대문구 생활체육·문화예술 자원조사

- 서대문구가 보유한 생활체육·문화예술 자원에 대한 조사를 통해 두 분야간 연계활용 방안을 모색
- 서대문구 생활체육·문화예술분야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주요 시책을 지원할 방안을 강구

2) 전문가 자문회의

□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정책개발 방향 및 자료분석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으로써 연구의 기본방향을 구성

3) 실무자 FGI

□ 실무자 FGI(정책관계자 및 서대문구 생활체육·문화예술 실무자)

- 서대문구 생활체육·문화예술 관계 및 지역특화 혹은 행정 관계자 대상 정책 기본방향 구상을 위한 실무자 FGI를 실시
- 서대문구 현장 친화적인 정책개발을 위해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활체육·문화예술 실무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진행
- 서대문구 지역 내가 아닌 생활체육·문화예술 정책 관련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진행

4) 현장조사 및 의견 수렴

- 시의적절한 현장 친화적 정책 제안을 위하여 문헌, 사례조사만이 아니라 실제 현장 조사를 진행

- 필요 시 현장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함께 진행함으로써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

5) 최종 정책제안

☐ 서대문구 지역 특화 생활체육·문화예술 정책 제안

- 변화하는 내·외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수준 높은 생활체육·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특화 정책을 제안
- 사례, 인터뷰 등의 분석뿐만 아니라 활용 가능한 양적·질적 데이터를 수집하여 정책 제안에 활용

제 2 장

서대문구 여건 분석

1절 서대문구 기본 현황

2절 서대문구 주요 특징

3절 소결

II. 서대문구 여건 분석

1. 서대문구 기본 현황

가. 서대문구의 지역 특성

1) 서대문구의 지리적 특성

☐ 서울특별시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뛰어나

○ 서울특별시의 북서부에 위치하였고 자치구는 삼각형 모양을 띄고 있음. 북쪽과 서쪽으로는 은평구, 동쪽은 종로구와 중구, 남쪽은 마포구에 접해 있어 서울 중심부와 접근성이 유리한 위치에 있음

☐ 서대문구의 인구는 2023년 6월 현재 기준으로 308,122명으로 20개 법정동과 14개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적은 17.63km²임

☐ 교통의 요지로서 좋은 입지 요건에도 불구하고 구의 중심부까지 그 영향이 미치지 못함

○ 경의선과 지하철 2·3·5·6호선이 지나고 있어 교통의 요지로 보이나, 실제로는 구의 경계만을 지나가는 형국으로 서대문구 중심부와 의 접근성은 좋지 못한 편임. 실제로 서대문구 중심부의 연희동 부근은 교통이용이 매우 열악한 환경임

☐ 대부분이 임야, 분지, 구릉의 세 지역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인왕산과 안산과 같은 임야와 함께 홍은동 홍제동 지역은 분지를 이루고 있어 계곡 등 수려한 선경을 이루고 있음

- 안산, 인왕산, 백련산, 홍제천, 불광천 등 뛰어난 자연경관을 중심으로 안산자락길, 북한산 자락길, 연희숲속길 홍제천 자락길 등이 조성되어 있어 ‘자연친화특구’ 라고 할 수 있으며, 이중에서도 안산 자락길은 봄, 가을 절경이 뛰어나 산책코스로 인기가 있는 지역임
- 한강으로 유입되는 홍제천과 불광천은 세검천을 원류로 흐르고 있으며 이 천의 주변으로 산책로 등이 조성되는 등 자연환경을 아우르는 환경개선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그림 2] 서대문구 위치 및 전철 노선도

-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대학교가 입지한 청년문화의 중심지
 -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명지대학교 등 4년제 대학이 6개교가 있으며, 전문대학 역시 2개교가 있어 서울 관내에서도 손꼽히는 교육특구라고 할 수 있음. 특히 연세대학교 부근의 신촌은 청년문화의 한 축으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임

□ 권역별로 지역 특성이 뚜렷하게 나뉨

- 서대문구는 본래 남·북가좌 권역, 홍제·홍은 권역, 연희·신촌 권역, 천연·충현 북아현 권역의 4개 권역으로 나누고 있으나 최근 민선 8기 시장은 이 권역을 세분화하여 6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발전 전략을 구상하고 있음
- 상업과 주거 기능의 홍제·홍은 권역, 유통과 주거 기능의 가좌·연희 권역과 서대문 권역, 업무지구와 주거 기능의 북아현 권역, 연세대와 이화여대 등 대학가를 중심으로 하는 상권이 발달한 신촌 권역과 뉴타운 개발 등 전통적으로 주거 기능이 강한 북가좌 권역 등 6개 권역으로 구분

나. 자연 환경

□ 거주 중심의 택지보다는 자연생태 위주의 환경 특성

- 북한산의 말단에 위치하여 인왕산, 안산, 백련산 등의 산줄기가 서대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산줄기를 따라 형성된 홍제천과 불광천 주변으로 택지가 조성되어 있음
- 광주산맥의 말단부에 해당하며 해발 33.82m의 인왕산과 295.9m의 안산, 그리고 215.5m의 백련산 등은 유달리 경사가 높은 봉우리의 형태로 솟아 있는 것이 특징임
- 북쪽 비봉에서 발원한 불광천과 백련산 동쪽을 감싸고 흐르는 홍제천, 안산과 인왕산 사이를 지나가는 만초천이 있으며 이 3개 하천 모두 한강으로 유입됨

1) 안산(鞍山)

□ 안산(鞍山)이라는 지명의 유래

- 무악산으로도 불렸으며, 산의 생김새가 말이나 소의 등에 짐을 싣기 위하여 사용한 길마와 같이 생겼다 하여 길마재라고도 하며, 모래재, 추모런이라고 불렀고 정상에 봉수대가 있어 봉우재라고도 불렀음
- 또한 조선시대에는 어머니의 산이라고 해서 모악산(母岳山)이라고 불렸으며 호랑이가 출몰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모아서 산을 넘어가야 했기에 모악산라고도 불렀다는 설도 있음

□ 서울시의 대표적인 도심 쉼터로서의 기능 수행

- 현재는 안산(鞍山)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으며, 서대문구청 후면에 위치하며 경사가 완만하고 전망이 좋아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의 많은 시민들이 찾는 대표적인 도심 쉼터임
- 안산을 찾는 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안산 주변으로 누구나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산책로와 메타세콰이아 숲을 잇고 주변에 숲속 쉼터, 만남의 광장 등의 시설을 조성한 ‘안산자락길’은 서울의 대표적인 산책로임

□ 정상에는 봉수대가 있는데 평안도에서 올라온 봉화가 안산에 연결되어 최종 남산으로 연결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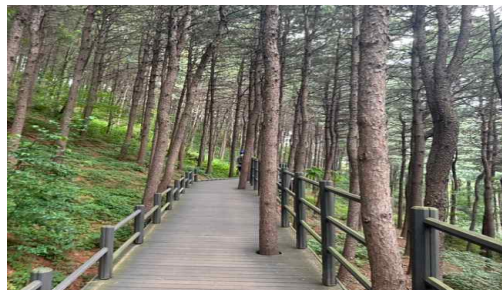
- 정상 부근에는 큰 바위들이 많고 서울시 중구 일대를 관망하는 전망이 뛰어나며, 태고종의 총본산인 봉원사(奉元寺)가 남쪽에 있으며 관음보살을 닮았다는 관음바위가 유명함
- 근래 새롭게 보수한 봉수대(서울특별시 기념물 제13호)가 위치함



[그림 3] 연희숲속쉼터



[그림 4] 안산 자락길 쉼터



[그림 5] 안산 자락길



[그림 6] 안산 봉수대

2) 인왕산(仁王山)

- 서울 종로구와 서대문구 홍제동(弘濟洞) 경계에 있는 산으로 서울시를 분지로 둘러싸고 있는 서울의 진산(鎭山) 중 하나임
- 조선이 건국되고 도성(都城)을 세울 때, 북악산을 주산(主山), 남산(南山)을 안산(案山), 낙산(駱山)을 좌청룡(左靑龍), 인왕산을 우백호(右白虎)로 삼았던 조선조의 명산임
- 해발 338.2m이며 인왕산이라는 이름은 이곳에 인왕사(仁王寺)라는 불교사찰이 있었기 때문임

- 산의 능선은 남북으로 길게 이어지는데 남쪽으로 행촌동과 사직동이 있고 동쪽으로 필운동, 누상동, 옥인동, 신교동, 청운동으로 이어지며 북쪽 산허리에 자하문고개를 통해 북악산(北岳山)과 연결되는 인왕산길이 지나며 서쪽으로는 서대문구 홍제동을 지나고 있음

3) 백련산(白蓮山)

- 서울시 서대문구와 은평구 사이에 있는 산으로 높이는 215m 임. 백련산이라는 이름은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백련사(白蓮寺)에서 유래되었고, 백련산은 응봉(鷹峰)이라고도 불렀는데 조선시대 왕족들이 백련산 바위에서 매사냥을 즐겼다고 전해짐
- 현재 매사냥을 즐겼던 바위는 남아있지 않지만, 매바위라는 이름의 바위를 최근에 다시 지정하여 명명하였다고함
- ‘서울시 우수(경관) 조망명소’와 ‘서대문 이음길’이 있으며, 안산과 인왕산에 비해 낮은 편이어서 서대문구민들의 가벼운 산책로로 각광받고 있음

4) 홍제천(弘濟川)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대문구, 마포구 일대에 걸쳐 흐르는 지방 2급 하천으로 조선시대에 이 하천 연안에 중국의 사신이나 관리가 묵어가던 홍제원이 있었던 까닭으로 ‘홍제원천’이라고도 함
- 물이 없는 도심속 황량한 사막으로 버림받아 왔으나 2011년까지 5년간에 걸친 복원공사를 거쳐 현재의 맑은 물이 흐르는 ‘생명천’으로 변신하였으며, 복원공사와 함께 홍제천 주변으로 새롭게 조성된 음악분수, 물레방아, 산책로, 자전거도로, 징검다리과 보도교, 인공 폭포 등은 구민들에게 즐거움과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음

- 특히 인공폭포 주변에 조성된 카페에는 전국에서 찾아오는 서울 내 가볼 만한 곳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서대문구의 대표적인 명소로 주목받고 있음



[그림 7] 홍제천 징검다리



[그림 8] 홍제천 인공폭포



[그림 9] 생명천으로 거듭나는 홍제천

5) 불광천(佛光川)

- 서울 은평구 불광동을 기점으로 역촌동·응암동·중산동과 서대문구 북가좌동, 마포구 성산동을 거쳐 흐르다가 홍제천과 합류하여 한강으로 흘러가는 하천임
- 불광천은 홍제천과 마찬가지로 비가 와야 물이 흐르는 건천(乾川)으로 한때 쓰레기와 악취로 가득했으나, 2002년 오수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지하수를 끌어올려 물이 흐르게 함으로써 자연 하천으로 탈바꿈되었음
- 하천변을 따라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운동 기구를 설치하고 갖가지 꽃나무·수초를 심어 주민들의 휴식처로 탈바꿈되었음

다. 인구 및 면적

1) 인구

□ 2023년 7월 기준 서울시 기초자치구별 인구수를 살펴보면 서대문구는 321,726명으로 전체 25개 자치구 중 18위를 차지하고 있음

<표 1> 서울시 기초자치구별 인구 순위

(단위 : 명)

순위	자치구	인구 수	순위	자치구	인구 수
1	송파구	662,872	14	중랑구	389,316
2	강서구	572,382	15	마포구	376,285
3	강남구	542,327	16	동대문구	355,667
4	노원구	504,641	17	광진구	350,820
5	관악구	502,430	18	서대문구	321,726
6	은평구	467,295	19	도봉구	311,386
7	강동구	463,005	20	강북구	295,773
8	양천구	441,517	21	성동구	286,564
9	성북구	441,065	22	금천구	242,567
10	구로구	417,774	23	용산구	232,564
11	서초구	408,753	24	종로구	151,349
12	영등포구	398,842	25	중구	132,054
13	동작구	390,843			

자료 : 2023년 2/4분기 서울특별시 주민등록인구통계

○ 서울시 인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치구는 송파구로 656,603명으로 확인되는데, 송파구는 서울시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이기도 함

○ 송파구 다음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강서구인데, 이 지역은
마곡지구 등이 개발되면서 많은 기업과 인구가 유입된 곳이기도 함

○ 서대문구와 인접하고 있는 은평구와 마포구를 살펴보면, 은평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6번째로 인구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며, 마포구는
서대문구에 비해 약 5만 5천 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서대문구 사회조사 2023년 7월 기준 서대문구 인구수는 307,870명
이며, 세대수는 147,184세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2> 서대문구 세대 수 및 인구수

(단위 : 세대,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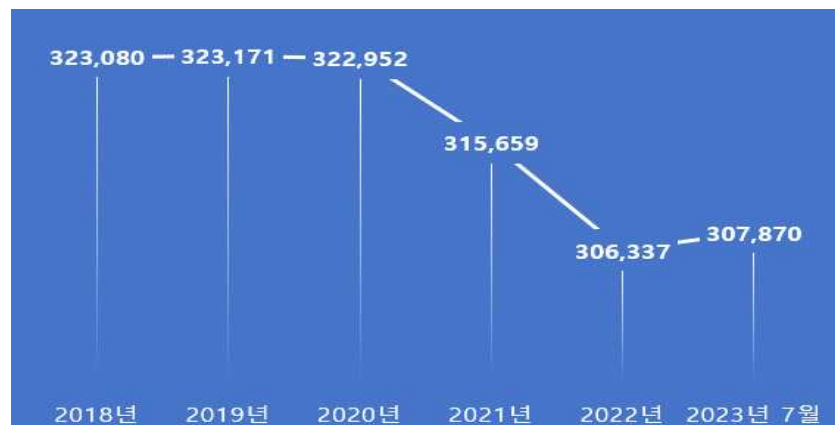
구 분	세대 수	인구합계	남자 인구	여자 인구
소 계	147,184	307,870	146,409	161,461
충현동	10,087	19,757	9,526	10,231
천연동	7,640	16,678	7,869	8,809
북아현동	7,092	15,549	7,449	8,100
신촌동	14,870	20,322	8,841	11,481
연희동	18,710	34,202	16,311	17,891
홍제제1동	11,062	24,875	11,622	13,253
홍제제2동	5,769	13,219	6,177	7,042
홍제제3동	8,018	17,741	8,508	9,233
홍은제1동	9,752	22,360	10,793	11,567
홍은제2동	13,245	28,747	13,802	14,945
남가좌제1동	6,172	16,733	8,011	8,722
남가좌제2동	13,362	29,229	14,098	15,131
북가좌제1동	6,823	17,650	8,457	9,193
북가좌제2동	14,582	30,808	14,945	15,863

자료 : 서대문구 공공데이터플랫폼 2023년 7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현황자료

○ 연희동이 34,202명과 18,710세대로 가장 많은 인구와 세대가 있으며, 홍제제2동이 13,219명과 5,769세대로 가장 적은 인구와 세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23년 2/4분기 서울특별시 주민등록인구통계>와 <서대문구 공공데이터플랫폼>자료의 인구수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90일 초과 장기체류 등록 외국인의 차이에 의한 것임

□ 서대문구의 인구는 COVID-19가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 이후부터 급속히 하락하였으며, 2023년 ‘With COVID-19’ 선언 이후로 점차 회복되고 있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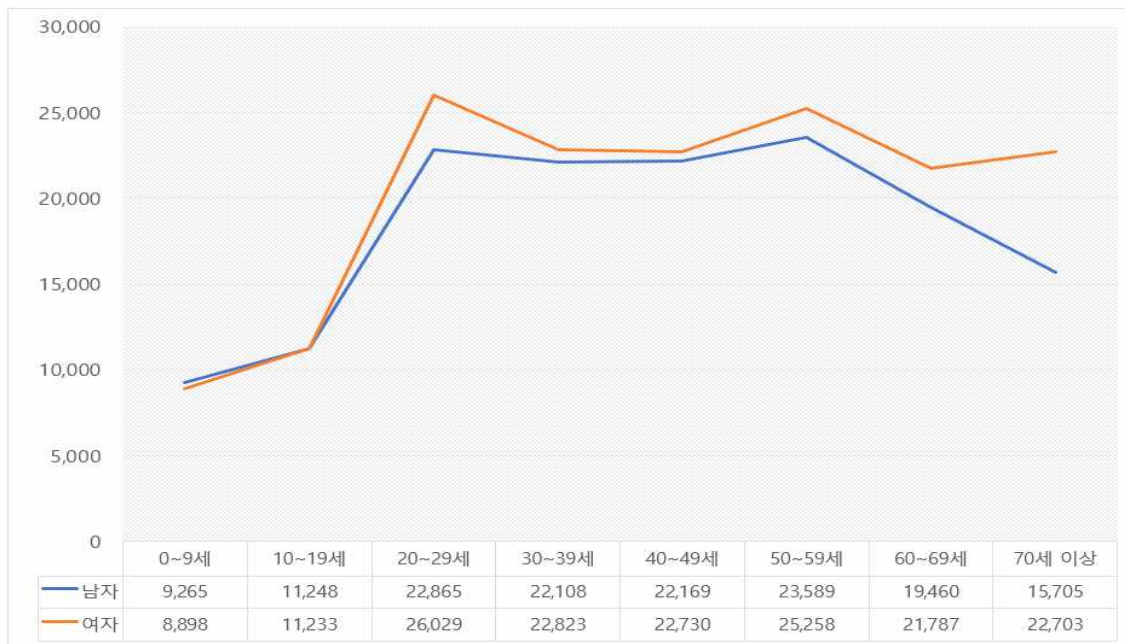


[그림 10] 서대문구 연도별 인구변화 추이

□ 서대문구는 20대와 30대 청년층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연세대, 이화여대 등 9개의 대학이 서대문구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으며, 인근의 마포구의 서강대와 홍익대가 지리적으로도 가깝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이와 함께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율 역시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전통적으로 서대문구 연희동, 북아현동 등이 서울 토박이들이 많이 거주하는 이유도 있을 것임

- 또한 노년층의 증가는 서대문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성별 구조는 전 연령에 걸쳐 남성에 비해 여성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11] 서대문구 연령별 인구수

<표 3> 서대문구 연령별 인구수(비율)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인구수 (비율)	18,225명 (5.9%)	22,567명 (7.3%)	48,990명 (15.9%)	44,897명 (14.6%)	44,919명 (14.6%)	48,946명 (15.9%)	41,208명 (13.4%)	38,370명 (12.5%)

- 60세 이상 인구 비중은 25.8%로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14% 이상)에 이미 도달하였다고 판단됨
- 이러한 추세라면 조만간 초고령 사회(총 인구 중 65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 진입을 예상할 수 있음

2) 면적

□ 서대문구는 2008년 5월 14개 동으로 행정동을 통폐합한 이후 현재까지 행정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의 총면적 605.3km^2 중, 서대문구는 17.6km^2 로 서울특별시 전체 면적의 약 2.9%를 차지함

○ 연희동은 서대문구에서 가장 넓은 면적인 3.1km^2 인 반면, 북아현동은 가장 작은 면적인 0.5km^2 에 불과함



[그림 12] 서대문구 동별 면적

2. 서대문구 주요 특징

가. 역사 및 사회

1) 역사

□ 개화기 이후와 독립운동의 역사와 상징 등 역사자원이 풍부한 곳

○ 1998년 10월 행정구역 변경으로 오늘날의 서대문구가 형성되었으며, 전통적으로, 독립문, 서대문형무소(현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등이 있어 역사적으로는 독립운동의 성지라고 할 수 있음. 이 외에도 국내 최초의 서양식 성당인 약현성당, 대한제국 시기 세워진 충정각, 스팀슨관과 언더우드관 등 구한말 역사적인 명소들이 있음



[그림 13] 서대문구 역사문화자원

○ 그 외에도 봉원사, 백련사 안산봉수대, 광혜원, 홍제동 문화촌, 유진상가 등 다양한 시대의 역사문화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한 곳임

2) 사회

- 수려한 자연환경 등으로 인해 서울시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도 쾌적한 주거환경
 - 서대문구는 인왕산과 안산 그리고 세검천을 원류로 흘러내는 홍제천과 불광천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어 자연녹지가 풍부한 환경으로 일찍이 전형적인 주거지역을 이루어 노후주택 및 시민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 최근 지구단위 재개발 및 환경개선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임
 - 산업화에 따른 도시의 다핵화 현상에 따라 권역별 특성이 구분되는데, 전통적으로 충정로 권역은 서울 도심부의 외곽을 형성하는 상업·업무지구로써의 기능을, 가좌권역은 유통과 주거의 기능, 홍제·홍은 권역은 상업과 주거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연세대와 이화여대 등 9개의 대학이 밀집되어 있는 신촌 권역은 청년 문화명소로써 서울 부도심의 하나로 상업지구를 이루고 있어서 교육 서비스업과 유흥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곳임
 - 연세대와 이화여대 등이 있는 신촌 권역은 젊은이들이 중심인 문화를 형성하는 반면, 독립문은 중·장년층들이 모이는 권역별 활동 인구 연령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성향을 보이는 것이 특징임
 - 서대문구를 지나는 지하철이 모두 구의 경계만을 지나고 있어 중심부와의 접근성이 좋지 않은 편이지만 향후 경전철 서부선과 강북횡단선이 개통될 경우, 지역 간 유기적 연결이 가능해짐에 따라 인구 유입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됨
 - 안산, 홍제천, 인왕산, 백련산 등 서대문구가 보유한 자연자원을 생활체육·문화예술·관광·교육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하여 지역특화 자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큼

- 대학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체육문화예술교육 및 인적자원과 지역상권 연계를 통해 지역활성화를 위한 특화산업 육성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임



[그림 14] 서대문구 권역 구분

나. 경제 및 사회복지

1) 경제 여건

- 경제활동인구와 경제활동 참가율 및 고용률 모두 증가하였으나, 서울시 평균 대비 낮은 수준임

- 서대문구 15세 이상 인구 28만 6천 명 중 경제활동인구는 16만 6천 명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은 58.2%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서울시 전체 62.4%보다는 낮은 수준(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1위)에 불과하며, 남성(63.4%)과 여성(49.1%)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고용률 역시 62.2%로 전년 60.8% 대비 1.4%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평균 68.4%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3위에 해당하는 것임
-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의 고용률이 27.9%로 가장 낮으며, 고용률이 가장 높은 30~49세의 고용률 역시 74.4%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3위에 그침

<표 4> 서대문구 경제활동 인구 현황

(단위 : 천명, %)

구 분		2021년					2022년				
		15세 이상인구	경제활동 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15~64세)	15세 이상인구	경제활동 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15~64세)
서울시	계 (증감률)	5.525 (0.0)	5.298 (0.2)	3.227 (-0.4)	62.1 (0.2)	66.9 (1.8)	8.447 (-0.9)	5.268 (-0.6)	3.180 (-1.5)	62.4 (0.5)	68.4 (2.2)
	남	4.048 (-0.2)	2.858 (-0.4)	1.189 (0.2)	70.6 (-0.3)	73.8 (0.1)	4.007 (-1.0)	2.849 (-0.3)	1.158 (-2.6)	71.1 (0.7)	75.8 (2.7)
	여	4.477 (0.1)	2.440 (0.9)	2.038 (-0.7)	54.5 (0.7)	60.4 (4.0)	4.440 (-0.8)	2.418 (-0.9)	2.002 (-0.8)	54.5 (0.0)	61.4 (1.7)
서대문구	계 (증감률)	287.1	160.5	126.6	55.9	60.8	286.7 (-0.1)	166.8 (3.9)	119.9 (-5.3)	58.2 (4.1)	62.2 (2.3)
	남	131.6	85.6	46.0	65.0	70.6	130.8 (-0.6)	88.7 (3.6)	42.1 (-8.5)	67.8 (4.3)	71.0 (0.6)
	여	155.5	74.9	80.6	48.2	52.2	155.9 (0.3)	78.1 (4.3)	77.8 (-3.5)	50.1 (3.9)	54.7 (4.8)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경제활동인구 총괄(해당년도 2/2분기 기준)

※시군구 통계는 2021년부터 생산

<표 5> 연령별 취업자 및 고용률(15세 이상) 현황

(단위 : 천명, %)

구 분	2021년		2022년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계	152.3	53.1	159.7	55.7
15~29세	32.3	44.1	31.3	42.9
30~49세	65.8	72.6	66.4	74.4
50~64세	44.1	62.8	46.7	66.8
55세 이상	37.6	38.4	43.4	43.8
65세 이상	10.2	19.2	15.2	27.9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경제활동인구 총괄(해당년도 2/2분기 기준)

※시군구 통계는 2021년부터 생산

□ 서대문구 총 사업체 수는 28,522개로 도매 및 소매업이 전체 산업의 24.3%를 차지함

○ 서대문구 사업체 수 규모는 ‘도매 및 소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운수 및 창고업’ > ‘기타’ > ‘협화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순으로 나타남

○ 2022년 서대문구 취업자의 47.3%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분야에 취업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 분야의 취업자가 27.65% 상승하고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취업인구가 1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종사자 규모별로는 전체의 88.34%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서대문구 소재 대다수 사업체가 영세 사업장인 것을 알 수 있음

○ 2021년 서대문구 산업체 종사자는 118,256명으로 전년대비 2,091명이 감소하였음

<표 6> 연령별 취업자 현황

(단위 : 천명, %)

구 분	2021년	2022년	
	취업자 수	취업자 수	증감률
계	152.3	159.7(100%)	4.9
농업, 임업 및 어업	0	0(0.0%)	-
광·제조업	9.1	11.6(7.3%)	27.5
건설업	9.0	10.3(6.4%)	14.4
도소매·음식숙박업	39.2	34.0(21.3%)	-13.3
전기·운수·통신·금융	24.1	28.1(17.6%)	16.6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71.1	75.6(47.3%)	6.3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경제활동인구 총괄(해당년도 2/2분기 기준)

※시군구 통계는 2021년부터 생산

<표 7> 연도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사업체 수(개)		20,095	28,769	28,522
종사자 수(명)		113,819	120,347	118,256
성별	남	55,966	59,983	58,797
	여	57,853	60,364	59,459

출처 : <2023년 서대문구 일자리 대책 세부계획>

<표 8> 사업체 종사자 규모별 현황

(단위 : 개, 명, %)

구 분	합계	1~4명	5~9명	10~19명	20~49명	50~99명	100~299명	300~499명	500~999명	1000명 이상
사업체 수	28,522 (100%)	25,196 (88.34%)	2,006 (7.03%)	766 (2.69%)	334 (0.41%)	118 (0.41%)	72 (0.25%)	16 (0.06%)	6 (0.02%)	8 (0.03%)
전년대비 증감률	-0.9	-1.2	1.3	5.9	0.0	-4.8	2.9	33.3	-33.3	14.3
종사자 수	118,256 (100%)	35,538 (30.05%)	12,673 (10.72%)	10,112 (8.55%)	10,289 (8.70%)	8,195 (6.93%)	10,967 (9.27%)	6,308 (5.33%)	4,239 (3.58%)	19,935 (16.86%)
전년대비 증감률	-1.7	-2.0	1.0	6.1	2.4	-3.3	-6.7	33.1	-34.9	-2.7

출처 : <2023년 서대문구 일자리 대책 세부계획>

2) 사회보장

□ 서대문구 연도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수 및 수급자 수’를 살펴보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2020년 대비 2021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서대문구 14개 동 중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수 및 수급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북가좌2동으로 수급 가구 수는 1,081가구이며 수급자 수는 1,521명으로 나타남

○ 그러나 수급가구 수 대비 수급자 수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홍은제2동으로 수급가구 수는 838가구인데 반해 수급자 수는 1,229명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15] 서대문구 연도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수 및 수급자 수

<표 9> 서대문구 동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수 및 수급자 수

(단위 : 개, 명)

구 분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	연희동	홍재1동	홍재2동	홍재3동	홍은1동	홍은2동	남가좌1동	남가좌2동	북가좌1동	북가좌2동
가구 수	562	646	484	470	672	576	448	550	600	838	213	1,026	352	1,081
수급자 수	718	754	595	534	929	787	599	752	779	1,229	287	1,330	544	1,521

□ 서대문구 복지시설은 총 113개소가 있으며 주로 노인복지시설과 아동 복지 시설 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종합사회복지시설은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홍은종합사회복지관’ 및 ‘이화여자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의 3개소에 불과하나 노인복지시설이 47개소, 아동복지시설 24개소, 장애인복지시설 19개소 등 다소 전문화된 복지시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그 외에도 ‘한부모 가족 시설’ 및 ‘노숙인 시설’, ‘다문화가족시설’ 및 ‘정신보건시설’ 등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선진국형 사회복지 시설을 보유하고 있음



[그림 16] 서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수

3) 교육환경

□ 서대문구의 교육시설 수는 평생교육기관 등을 합하여 총 122개소인 것으로 나타남

- 서대문구는 경기대학교, 감리교신학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명지대학교 등의 4년제 대학 5개교와 서울여자간호대학교, 명지전문대학, 추계예술대학교 등 전문대학 3개교 그리고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의 1개교가 있음
- 대신야학, 종합사회복지관 및 복지시설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인문해교실 9개소는 제외한 숫자임
 - 대신야학,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연희노인여가복지시설, 이화여자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홍은종합사회복지관,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서대문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등 9개소

<표 10> 서대문구 교육시설 수

구 분	계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기타학교	평생교육기관
개소	122	9	7	14	19	22	3	48

4) 청소년 관련 시설

□ 서대문구에 위치한 청소년 관련 시설은 총 8개소인 것으로 파악됨

- 청소년 시설 중에는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가 있으며, 서대문경찰서와 연계 운영하는 ‘서대문청소년경찰학교’ 등 2개 시설을 제외한 6개 시설은 모두 서대문구에서 운영하고 있음
 - 서대문구에 소재한 청소년 관련 시설은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홍은청소년 문화의집, 서대문청소년수련관, 서대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서대문청소년경찰학교 등 공공운영기관 6개소와 민간운영 기관인 서대문청소년아지트쉽표가 있음

- ‘홍은청소년문화의집’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홍은예술의전당’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전문교육을 운영하고 있음
- ‘가재울청소년메타센터’는 2023년 9월 20일 국내 최초로 청소년 활동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개관하였음

5) 건강 지수

- 서대문구 구민의 건강 지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서대문구 구민의 건강 지수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대문구 구민에 대한 건강 지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건강 실천율’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3위이며 서울특별시 평균 62점에 비해서도 5.4점이나 적은 56.6점을 기록함
 - ‘중증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22위로 조사되었으며, ‘비만율’ 서울시 평균 29.5점에 비해 다소 높은 30.2점을 기록하였으나 서울시 자치구 중 10위로 조사됨
 - ‘스트레스 인지율’은 17위, ‘우울감 경험율’은 3위로 서울시 평균 7.3점을 훨씬 상회하는 10.2점을 나타내어 서대문구 구민의 우울감 경험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됨
 - 특히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의 경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인 25위의 42.0점을 차지하는 등 서울시 평균인 50.7점에 비해 한참 뒤처지는 결과를 보이고 있음
 - 이는 서대문구민이 스스로 인지하는 건강수준이 매우 좋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있음

<표 11> 서대문구 건강 지수

(단위 : %)

구 분	걷기실천율	중증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비만율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서울시	62.0	22.8	29.5	24.0	7.3	50.7
종로구	60.6	23.8	27.5	27.9	8.7	50.2
중구	60.3	28.7	25.5	23.9	7.7	56.7
용산구	65.4	21.3	27.2	16.7	3.6	59.4
성동구	68.6	22.4	28.0	25.8	6.9	51.4
광진구	66.4	22.7	31.1	25.9	8.4	51.6
동대문구	65.4	18.4	29.5	17.7	3.2	47.0
중랑구	59.4	22.0	34.6	28.5	6.2	45.2
성북구	60.3	22.9	29.8	26.0	7.4	48.8
강북구	59.1	15.0	33.0	22.4	4.5	49.3
도봉구	64.9	28.2	32.7	26.5	7.5	47.8
노원구	67.5	21.8	29.1	18.4	7.5	48.4
은평구	53.5	13.1	30.7	20.6	3.7	59.4
서대문구	56.6	19.0	30.2	23.4	10.2	42.0
마포구	56.8	23.4	28.9	23.9	10.3	48.8
양천구	68.4	26.5	30.1	24.0	10.2	52.4
강서구	60.9	23.8	27.7	21.9	7.2	45.5
구로구	63.9	19.4	31.5	24.5	7.2	44.7
금천구	55.5	23.7	33.1	24.2	11.9	42.6
영등포구	63.2	24.1	28.5	25.7	7.6	44.0
동작구	58.5	24.2	29.7	22.5	6.0	58.6
관악구	56.9	26.1	31.0	29.8	8.1	59.0
서초구	67.1	28.4	25.3	26.2	7.1	50.7
강남구	61.5	21.8	25.9	26.3	7.3	57.3
송파구	67.3	24.3	28.1	26.6	9.6	52.3
강동구	58.5	25.7	28.9	20.1	7.5	51.4

자료 : 「지역사회 건강통계」의 자료를 재구성

3. 소결

- 서대문구 ‘여가활동 만족도’ 조사결과 ‘만족이 34.3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2020 서대문구 사회조사」)
 - 10점 만점 기준 평균은 5.54점이며, 만족 34.3점, 보통 50.6점, 불만족은 15점으로 서대문구 구민들은 서대문구의 여가활동 만족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됨
- 2016년과 2020년 「서대문구 사회조사」 중 ‘가족과의 여가생활’을 비교한 결과 2016년은 27.2%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43.7%로 4년 동안 가족과의 여가생활 비율이 2배 가까이 증가함
 - 이는 COVID-19의 영향도 있으나, 최근 일과 가정의 양립, 여가가 있는 삶을 추구하게 된 사회적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짐
- 서대문구민의 ‘생활환경 체감정도’의 경우, 주거환경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이 66.4%, 평균 6.89점으로 서대문구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서대문구 지속 거주 의향에 대해서도 조사자의 81.9%가 서대문구에 계속 거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서대문구에 대한 생활환경은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서대문구 구민들의 ‘관심 있는 지역 이슈’의 경우 ‘문화행사, 축제 등 각종 행사 소식’이 22.9%, ‘생활불편 민원 관련 사안’ 19.7%, ‘강좌 또는 문화프로그램 관련 정보’ 14.5%, ‘지역개발 및 경제 관련 정보’ 12.4%, ‘교육 및 보육 관련 정보’ 9.9% 순으로 나타나 ‘문화행사 및 프로그램’과 관련한 지역 이슈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 서대문 구민들의 건강 지수는 서울특별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수들이 대부분이며 자치구 중 하위권에 속하는바, 구민들의 건강
지수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꾸준한 생활체육과 문화예술에 대한 참여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고령화 사회로 진행될수록 노인의 부양
부담 중 건강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오늘날 더욱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고 있음
- 건강 문제에 대한 대책은 질병 발생 후 치료보다 생활환경과 습관을
개선하여 질병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가 중요한 이슈
이며, 구민들의 여가시간을 생활체육과 문화예술 참여로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함
- 전통적인 엘리트 체육과 문화예술 중심 정책에서 생활체육과 생활
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추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체육과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요구는 건강증진과 복지의 측면에서
고령사회, 생활습관병 유병율 증가,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통한 삶의 만족도 추구로의 인식변화 등 사회·경제·환경
등 사회 전반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해결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임

제 3 장

서대문구 생활체육·문화예술 관련 현황

1절 서대문구 생활체육 관련 현황

2절 서대문구 문화예술 관련 현황

3절 소결

Ⅲ. 서대문구 생활체육·문화예술 관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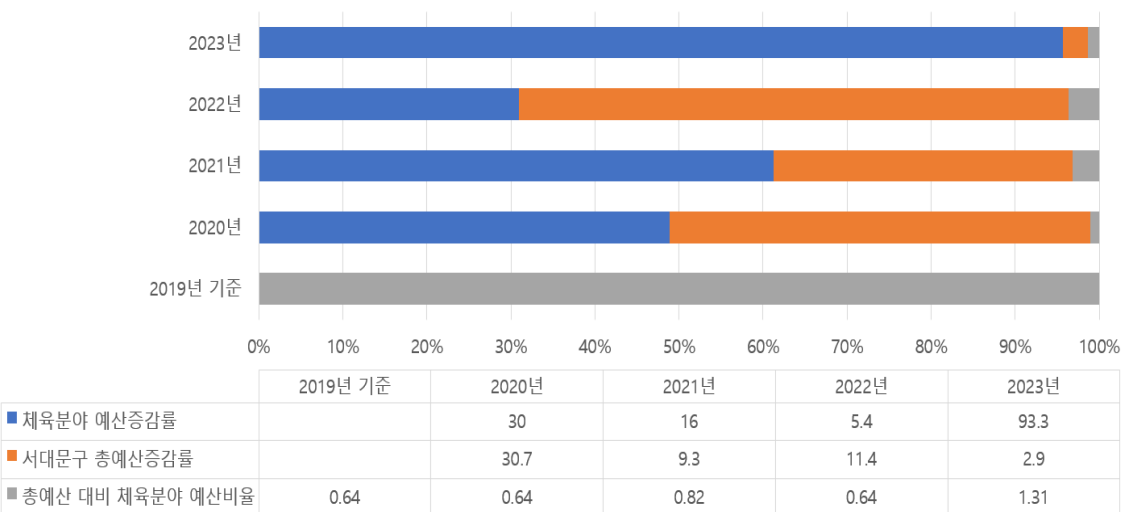
1. 서대문구 생활체육 관련 현황

가. 예산 및 시설

1) 체육 예산 현황

□ 서대문구 전체 예산 및 체육 예산은 2021년과 2022년 잠시 증가율이 정
체되었으나 2023년 이후 대폭 증액되는 양상을 보임

○ 서대문구의 체육 예산 비율은 2019년 서대문구 전체 예산 대비
0.64%였으며, 이후 0.64%와 0.82%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3년에는
다시 1.31%로 대폭 확대되었음



[그림 17] 서대문구 전체 예산 대비 체육 예산 비율 변화

자료 : 2019~2023년 <서대문구 예산서>의 내용을 재구성

- 특히 2022년 대비 2023년 체육 예산은 무려 93.3% 증액되어 향후 서대문구의 체육분야에 대한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임

<표 12> 서대문구 연도별 체육 예산 변화

(단위: 천 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체 육	3,936,677	5,117,791 ▲30%	5,934,627 ▲16%	5,617,023 ▼5.4%	10,860,088 ▲93.3%
서대문구 총예산	612,341,729	800,481,176 ▲30.7%	725,827,534 ▼9.3%	808,315,613 ▲11.4%	832,012,773 ▲2.9%
총예산 대비 체육 예산 비율	0.64%	0.64% ▲-	0.82% ▲0.18%	0.64% ▼0.18%	1.31% ▲0.67%

자료 : 2019~2023년 <서대문구 예산서>의 내용을 재구성

2) 공공체육시설 현황

□ 서대문구의 공공체육시설이며 총 16개소를 운영 중임

- 서대문구의 대표적인 문화·체육복합시설인 서대문문화체육회관과 2021년부터 운영 중인 북아현문화체육센터를 비롯하여 다목적체육관인 궁동체육관, 가좌다목적구장 등 총 4개의 다목적 체육시설이 있음
- 그 외에 단일목적 체육시설로는 서대문구립·서대문돌산 인조잔디구장, 홍은·현저·가좌 테니스장, 홍제농구장, 홍제게이트볼장, 홍제·금화 배트민턴장 등 9개의 시설이 있으며, 그 외에 북아현·홍제·천연 등 3곳의 야외운동시설이 있음

<표 13> 서대문구 공공 체육시설 현황

연번	시 설 명	시설현황
1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복합 문화체육시설(연면적 9,695.59m ²)
2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복합 문화체육시설(연면적 5,307.15m ²)
3	공동체육관	다목적 체육관(연면적 982.8m ²)
4	서대문구립 인조잔디구장	잔디(94×61m), 트랙(2.4×332m), 조명 축구장 1면, 조깅 트랙
5	서대문돌산 인조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32×49m)-풋살구장 2면
6	홍은테니스장	테니스장 2면
7	현저테이스장	테니스장 2면
8	가좌테니스장	테니스장 2면
9	가좌다목적구장	테니스장 1면, 족구장 1면
10	홍제농구장	농구장 1면
11	홍체게이트볼장	게이트볼 2면
12	홍제배드민턴장	배드민턴장 6면
13	금화배드민턴장	배트민턴장 5면
14	북아현 야외운동시설	야외 운동기구 5개
15	홍제 야외운동시설	야외 운동기구 8개
16	천연 야외운동시설	야외 운동기구 5개

출처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나. 체육 관련 현황

1) 체육단체

- 서대문구 체육단체는 ‘서대문구체육회’와 ‘서대문구장애인체육회’ 2개 단체가 있음
 - ‘서대문구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와 국민체육회 정관 제41조 및 제42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음
 - ‘서대문구장애인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의거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제6조 규정에 의해 설립되었음
 - 두 체육회 모두 구민 및 서대문구 거주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진작, 자발적인이고 지속적인 체육활동, 건강 및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체육활동을 운영방침으로 하고 시설운영 보다는 체육활동 추구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음

2) 생활체육 동호인

- 서대문구 생활체육 동호회는 25개 종목 282개 동호회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14> 서대문구 생활체육 동호회 수

(단위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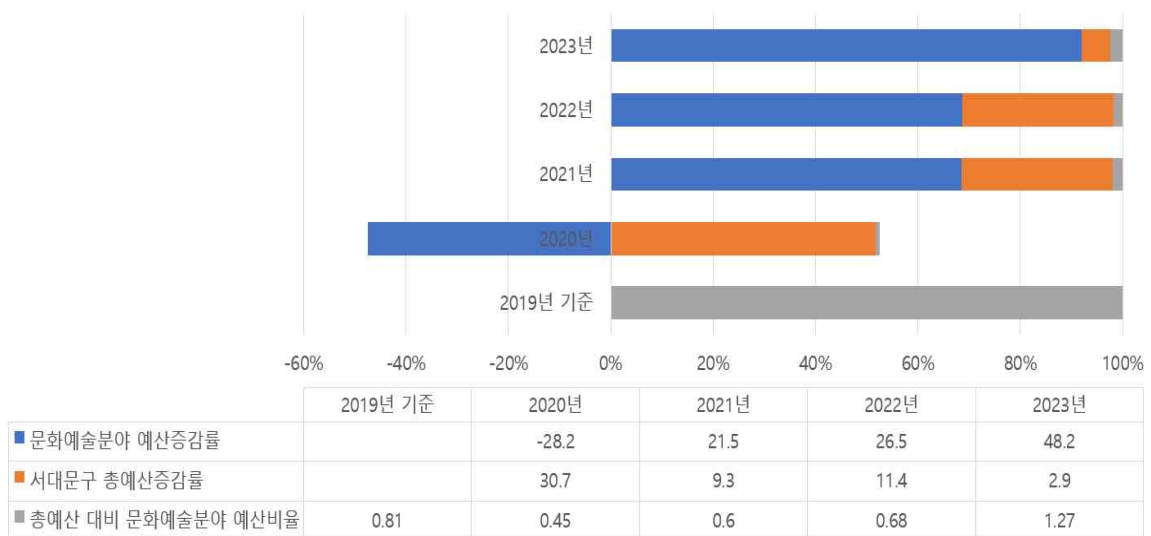
계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탁구	볼링	농구	바둑	족구	게이트볼	낚시	검도	펜싱
282	13	13	14	13	12	14	7	8	1	4	7	4
등산	요가	골프	수영	복싱	유도	체조	댄스스포츠	당구	국악기공	야구	태권도	합기도
11	6	7	8	3	5	21	8	6	19	11	44	23

2. 서대문구 문화예술 관련 현황

가. 예산 및 시설

1) 문화예술 예산 현황

- COVID-19의 여파로 2020년 서대문구 문화예술 예산은 전년 대비 28.2%나 대폭 삭감되었다가 점차 회복세를 보임
- 2021년 이후로는 문화예술 예산이 21.5%와 26.5%로 점차 증액되고 있으며, 2023년에는 48.2%로 대폭 증액되는 현상을 보임
- 2023년 서대문구 총예산 대비 문화예술 예산 비율은 1.27%를 차지하고 있으나 체육분야의 1.31%에 비해서는 다소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그림 18] 서대문구 전체 예산 대비 문화예술 예산 비율 변화

자료 : 2019~2023년 <서대문구 예산서>의 내용을 재구성

<표 15> 서대문구 연도별 문화예술 예산 변화

(단위: 천 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문화예술 (문화관광 포함)	4,965,011	3,566,645 ▼28.2%	4,331,765 ▲21.5%	5,479,719 ▲26.5%	10,581,902 ▲48.2%
서대문구 총예산	612,341,729	800,481,176 ▲30.7%	725,827,534 ▼9.3%	808,315,613 ▲11.4%	832,012,773 ▲2.9%
총예산 대비 문화예술 예산 비율	0.81%	0.45% ▼0.36%	0.60% ▲0.15%	0.68% ▲0.08%	1.27% ▲0.59%

자료 : 2019~2023년 <서대문구 예산서>의 내용을 재구성

2) 문화예술분야 시설 현황

- 서대문구 소재 문화재 수는 국가지정문화재 65점과 서울시 지정문화재 29점, 등록문화재 31점, 문화재 자료 1점 등 총 126점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음

<표 16> 서대문구 문화재 수

(단위 : 점)

총 계	국가지정문화재(65점)					서울시 지정문화재(29점)			등록 문화재	문화재 자료
	국보	보물	사적	국가무형 문화재	중요민속 문화재	유형	무형	기념물		
126	5	49	6	1	4	26	2	1	31	1

- 서대문구 도서관 시설은 서울시 교육청의 서대문 도서관 1개소와 이진아기념관 등의 구립도서관 4개소 등이 있으며, 그 외 각 동별 작은도서관 14개소 및 서대문구청, 아현역, 독립문역 및 홍제역 등에 설치된 4개소의 스마트 도서관이 있음

<표 17> 서대문구 도서관 현황

(단위 : 개)

총 계	서울시 교육청	구립도서관	작은도서관	스마트 도서관
25	1	4	14	4

- 서대문구 소재 문화예술 시설은 총 24개소가 있으며 문화기반시설, 복합 문화공간, 공연장 및 박물관 등이 있으며 공공과 민간이 운영하고 있음
- 서대문구 소재 문화기반시설은 ‘신촌 문화발전소’, ‘창작놀이센터’, ‘청년 창업꿈터’, ‘이화습터’, ‘신촌박스퀘어’, ‘아리수 스트로우 광장’ 등의 6개소가 있음
- 복합문화공간은 ‘연희예술극장’ 과 ‘복합문화 공간 몽향’ 의 2개소가 있음
- 공연장의 경우에는 ‘서대문문화체육회관’ 과 ‘북아현문화체육센터’ 의 공공공연장 2개소와 ‘Ecc 삼성홀’ ‘금호아트홀 연세’, ‘충청로 난타전용극장’, ‘신촌 아트레온 무빙온’, ‘신촌 퀴라이브홀’, ‘리움홀’, ‘IM SPACE’ 등의 민간공연장 7개소가 있음
- 박물관은 서대문구에서 운영하는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및 ‘독도체험관’ 3개소가 있으며, 이화여대에서 운영하는 ‘이화여대 박물관’, ‘이화여대 자연사박물관’ 과 연세대에서 운영하는 ‘연세대학교 박물관’ 이 있음

<표 18> 서대문구 문화예술 시설 수

(단위 : 개)

총 계	문화기반시설	복합문화공간	공연장		박물관	
			공공	민간	공공	민간
23	6	2	2	7	3	3

나. 서대문구 명소와 축제

1) 서대문구 명소

□ 서대문구의 명소로 알려진 곳은 서대문 형무소역사관을 비롯하여 13개소의 명소가 있음

○ 그 중 최근 홍제천 인공폭포는 유튜브의 숏츠나 인스타그램의 릴스 등에도 자주 등장하고 있는 연인들의 핫플레이스로 급부상하고 있는 공간임



[그림 19] 홍제천 인공폭포를 다룬 유튜브 숏츠

출처 : 유튜브 홈페이지

○ 특히 MZ세대로부터 시작한 ‘~멍’ 중에서도 ‘폭포멍’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낼 만큼 서대문구에 들르면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장소로 각광받고 있음

－ 서대문구 명소로는 서대문 형무소역사관, 서대문 독립공원,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서대문 홍제폭포, 안산 황톳길, 안산, 연희숲속쉼터, 신촌, 이대, 홍제천, 영천시장, 옥천암, 봉원사가 있음

2) 서대문구 축제

- ‘서대문 독립축제’는 서대문구를 가장 대표하는 축제이며, 이 외에도 ‘신촌글로벌대학축제’를 비롯하여 7개의 대표 축제가 개최되고 있음



[그림 20] 벚꽃축제



[그림 21]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축제



[그림 22] 어린이 축제



[그림 23] 서대문 독립축제



[그림 24] 신촌글로벌대학문화축제



[그림 25] 신촌카운트다운콘서트



[그림 26] 굴레방 나눔 한마당축제

출처 : 서대문구 홈페이지

3. 소결

1) 도시부문

□ 대학, 상권, 업무 등 권역별 특징이 뚜렷하여 분절적 특성의 연계 필요

○ 상권과 대학이 밀집한 신촌권역, 업무지구 역할의 충정로, 노후주택 밀집 지역인 연희동과 재개발 주거지역인 가재울, 홍제천 등 자연환경을 지닌 홍제동 등 권역별 특징이 뚜렷하나 다소 분절적이므로 콤팩트시티와 같이 권역 내 특성을 연계 확장하는 도시 브랜딩에 기반한 문화적인 특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주거부문

□ 급격한 정주환경 변화 속, 난개발 우려. 삶의 질 높이는 도시 정책의 전개 필요

○ 연희, 북아현 등 노후지역과 홍제 균형발전지구, 가재울뉴타운 등 지역 내 물리적 격차가 있고, 재개발 사업들이 추진되는 가운데 난개발의 우려가 있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정주환경에 대응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도시정책의 전개가 필요

3) 산업부문

□ 서부경전철, 강북횡단선 등 지역 활력을 견인할 신성장 동력의 모색 필요

○ 가재울뉴타운과 홍제균형발전지구 지정의 호재에 이어 서대문구의 지정학적 위치에 비해 좋지 않았던 교통환경의 변화라는 새로운 기회와 성장의 가능성 또한 큼. 위기와 기회가 교차 중인 서대문구의 미래 성장을 이끌어낼 신성장 동력 모색이 필요함

4) 미래부문

- 역사, 관광, 창의인력 등 풍부한 지역자원의 문화적 가치발굴과 활용이 중요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독립문 등과 같은 역사자원, 안산, 인왕산, 홍제천 등의 자연환경을 연계·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서대문구의 최대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서대문구 소재의 9개 대학 등 풍부한 창의인력을 활용하여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발굴→연계→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제 4 장

정책 환경 분석

1절 체육 관련 법규

2절 문화예술 관련 법규

3절 정부 및 지자체의 생활체육·문화예술 운영 방향

4절 시사점

Ⅳ. 정책 환경 분석

1. 체육 관련 법규

가. 관련 법령 및 정책

1) 「국민체육진흥법」

□ ‘체육에 관한 일반법’으로 국민의 체력을 증진, 체육인 인권 보호 및 건강한 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관련 기본 시책 수립 및 시행의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진흥협의회 설립 의무 규정, 체육지도자 양성 및 체육시설 설치 등 전반적인 체육 진흥을 위한 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2) 「생활체육진흥법」

□ 생활체육의 기반 조성 및 국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여가 선용 및 복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

○ 생활체육 활성화와 전문체육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체육정책의 통일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제정하였으며, 국민의 생활체육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체육동호인 조직의 육성과 지원을 명시하였음

○ 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생활체육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 주기를 5년으로 규정

<표 19> 「국민체육진흥법」 주요내용

관련조항		주요내용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체육 진흥협의회	①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	지방 체육의 진흥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9조	학교 체육의 진흥	학교는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	직장 체육의 진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직장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지도·육성을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④「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장 체육에 관한 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도·감독한다.
제10조의2	노인 체육의 진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절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절한 확보와 그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직장의 장은 종업원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학교의 체육시설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이용되어야 한다.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6조	여가 체육의 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가 체육 활동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레크리에이션 보급과 프로 경기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경마와 경륜·경정 등 국민 여가 체육 활동이 건전하게 시행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6조의2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에 관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과학적 체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표 20> 「생활체육진흥법」 주요내용

관련조항		주요내용
제1조	목적	이 법은 생활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여가 선용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국민의 생활체육 권리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한 신체활동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생활체육을 즐길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생활체육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5조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체육동호인 조직의 육성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동호인조직과 장애인 체육동호인 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

○ 총 5장 40조로 구성된 이 법은 공공체육시설 설치와 민간체육시설의 권리 및 의무를 정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직장의 장에게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의무를 부가하는 동시에 지역주민을 위해 체육시설을 개방토록 하는 규정을 포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체육시설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을 의무화

- 체육시설 안전점검 및 체육시설 정보관리 종합 시스템을 구축할 법적 근거 마련
- 체육시설 안전관리 업무를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체육시설 관리감독 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 및 체육시설 안전점검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규정 마련

4) 「스포츠클럽법」

-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
- 기존 생활체육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미비, 체계적 지원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체화하고자 한 것
- 스포츠클럽의 등록요건과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과 운영기준 그리고 지정 스포츠클럽을 통한 종목별 전문선수 양성 및 비인기종목 육성 등에 필요한 비용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지원 등에 대해 명시

5) 「스포츠기본법」

- 스포츠분야를 총괄하고 각 업무영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을 마련하고자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그리고 스포츠 정책의 방향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의 발전과 사회통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

○ 스포츠의 가치가 교육, 문화,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스포츠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스포츠의 다양성, 자율성과 민주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음

□ 스포츠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의 기본원칙, 전문·생활·장애인·학교·프로 스포츠와 스포츠산업, 스포츠클럽, 스포츠시설 및 인력, 스포츠 윤리 및 스포츠 가치, 스포츠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 스포츠 국제교류, 스포츠 기부문화 등 스포츠 각 분야별 업무 영역을 총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

나.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1) 「서울특별시 체육진흥조례」

-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시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서울특별시장의 시민에 대한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해 전문체육」생활체육」장애인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과 체육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2) 「생활체육진흥조례」

- ☐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 ‘서울특별시 생활체육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

3)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서울특별시 산하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 사용료, 입장료 징수와 체육시설의 위탁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위탁 사항을 정함

다. 서대문구 조례

1) 「서대문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서대문구민의 자발적인 생활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구청장은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체육종목을 운영 및 지원할 수 있고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활동과 장애인 체육단체,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에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급을 위한 근거를 제공

- 서대문구체육회 및 서대문구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지도·감독의 권한 제공

2) 「서대문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서대문구 구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기개발 욕구의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서대문구의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에 대한 교육과목 및 교육과정, 수강료 징수, 교유기간, 강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3)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4) 「서대문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8조 및 제29조,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장애인체육동호인조직’, ‘장애인체육단체’, ‘장애인우수선수’, ‘장애인체육지도자’, ‘장애인체육시설’ 등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 장애인의 자발적 체육활동 권장보호육성, 장애인체육시설 확충 및 장애인 편의 시설 제공 등 장애인체육증진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 장애인체육회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함

5)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 공공집회와 구민 문화·예술의 진흥 및 향상에 기여하고, 구민의 심신단련 및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하며, 또한 주민편의시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소속하에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운영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

2. 문화예술 관련 법규

가. 관련 법령 및 정책

1) 문화기본법

- ☐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뿐만 아니라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문화의 가치가 우리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개인이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아야함을 규정하고 있음
- ☐ 문화에 대한 정의와 ‘국민의 권리’, ‘문화진흥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 ☐ ‘문화인력의 양성’과 ‘문화진흥을 위한 조사연구개발’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2) 「문화예술진흥법」

- ☐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
 -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에서는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 문화소외계층 지원,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에 대하여 규정함

<표 21> 「문화기본법」 주요내용

관련조항		주요내용
제2조	기본이념	이 법은 문화가 민주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
제4조	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문화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문화 진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정책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 2. 국어의 발전과 보전 3. 문화예술의 진흥 4. 문화산업의 진흥 5.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 6. 문화복지의 증진 7. 여가문화의 활성화 8. 문화경관의 관리와 조성 9. 국제 문화 교류·협력의 활성화 10. 지역문화의 활성화 11. 남북 문화 교류의 활성화
제10조	문화인력의 양성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의 가치를 확산하고 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문화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개발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한 국민의 문화 향유권의 확대를 위하여 문화 향유와 관련한 실태조사와 관련 조사·연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문화정책의 조사·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고 그 지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개발하는 전담기관과 이를 지원하는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표 22> 「문화예술진흥법」 주요내용

관련조항		주요내용
제5조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물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전문인력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시설의 전문적 운영에 필요한 기획·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문화산업의 육성·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의 육성시책과 용자의 알선, 기술 도입과 보급에 관한 지원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 육성시책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의3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	기금의 설치 등	①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용·관리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정	①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축주의 출연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③제1항 제2호에 따라 기부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④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價額)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민족전통문화의 보존 계승 및 발전 3. 남북 문화예술 교류 4. 국제 문화예술 교류 5.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의 출연 7.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경비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9. 공공미술(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 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진흥을 위한 사업 10.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 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3) 「지역문화진흥법」

☐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지정함

-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에서는 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지역의 생활문화진흥,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등에 관하여 규정함
- 따라서 서대문구는 지역문화진흥법에 의거하여 문화재단을 설립 운영할 수 있으며, 기부금을 받거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재정 마련이 가능함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지정과 고시, 대상사업, 운영, 예산, 재정지원, 경영평가 등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
- 문화재단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표 23> 「지역문화진흥법」 주요내용

관련조항		주요내용
제3조	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책을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3.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4.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제7조	생활문화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개인 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 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 문화예술위원회 의 설립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 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 운영할 수 있다. ②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 문화예술위원회 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지역문화진흥 재정의 확충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 재정의 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재정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지역문화진흥 기금의 조성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지역문화진흥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용 관리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부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價額)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⑤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표 2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관련조항	주요내용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출자·출연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6조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 위원회	①출자·출연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운영의 타당성 등 2. 제9조제4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임 요구 3.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제외 대상기관의 선정 4.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진단 대상기관의 선정 5. 제3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경영진단 결과 필요한 조치 6. 제30조제4항에 따른 조치 제외기관의 선정 7. 그 밖에 출자·출연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출자·출연기관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부지사(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시장 부지사를 말한다),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이 된다.												
제8조 정관	①출자·출연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출연기관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table border="0"> <tr> <td>1. 목적</td><td>2. 명칭</td></tr> <tr> <td>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td><td>4. 자본금 또는 출연금</td></tr> <tr> <td>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td><td>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td></tr> <tr> <td>7. 임직원에 관한 사항</td><td>8. 이사회의 운영</td></tr> <tr> <td>9.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td><td>10. 예산과 회계</td></tr> <tr> <td>11. 정관의 변경</td><td>12. 해산에 관한 사항</td></tr> </table>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출자·출연기관은 제5조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의 운영	9.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10. 예산과 회계	11. 정관의 변경	12. 해산에 관한 사항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의 운영												
9.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10. 예산과 회계												
11. 정관의 변경	12. 해산에 관한 사항												
제15조	출자·출연기관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그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제20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출자금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할 수 없다. ③출자금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문화예술교육지원법」

□ 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과 정부의 역할,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

○ 또한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6)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정함

○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후원 대책 마련에 대한 의무와 함께 문화예술을 후원한 단체 및 개인은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음을 명문화하였음

(7)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들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 법에서는 여가의 중요성과 여가 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여가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야 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하고 여가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함

<표 25>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주요내용

관련조항		주요내용
제3조	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	①문화예술교육은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 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제5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이하"시·도"라 한다) 교육청 상호 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표 26>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관련조항		주요내용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미리 문화예술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	조세와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후원을 장려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자 및 문화예술후원 매개 단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표 27>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주요내용

관련조항		주요내용
제2조	기본이념	이 법은 여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켜 일과 여가의 조화를 추구함으로써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 활성화 관련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	여가프로그램의 개발및보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여가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하여야 한다.
제13조	여가전문인력의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정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문화예술 관련 서울특별시 조례 및 자치법규

1)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 서울특별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문화기본법」 및 동법 및 시행령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지방문화원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서울특별시민이라면 누구나 생활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창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서울특별시 정책에 문화적 관점을 확산하는 것이 기념이념임

○ 이 조례에서는 시민의 문화권 보장, 문화도시 정책의 수립, 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 문화영향평가,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의 지정과 육성, 지방문화원의 육성, 문화예술축제의 육성, 문화예술 공간 및 문화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노력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함을 제시하고 있음

<표 28>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주요내용

관련조항		주요내용
제6조	시민의 문화권 보호 및 확산	①시장은 시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계층, 연령, 지역, 성(性), 인종, 종교,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 접근, 참여, 창작의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이 문화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시민의 문화권 증진을 위해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	문화예술축제의 육성	시장은 시민 참여적이고 국제적인 문화예술축제의 육성·발전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 ☐ 서울특별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표 29>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주요내용

관련조항		주요내용
제3조	조직·인력 운용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법 제6조제12항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 2. 행정1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재정기획관 3. 영 제4조제4항제3호에 따라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노동계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등의 분야에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9명 이내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다. ④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시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출연 기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보관·공개

다. 서대문구 문화예술 관련 조례

1) 「서대문구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및 제39조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예술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서대문구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조례에 의한 서대문구 문화예술 진흥사업은 ①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개선, ②문화예술(전통문화예술을 포함한다) 관련 공연, 전시, 강좌 등의 개최, ③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 ④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 ⑤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 환경 조성, ⑥구 대표 축제를 비롯한 지역축제 개최 및 지원, ⑦국제 문화교류 행사 개최 및 지원, ⑧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 구청장은 경제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을 규정함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이하 회관)은 공공집회와 구민 문화·예술의 진흥 및 향상에 기여하고, 구민의 심신 단련 및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하며, 또한 주민편의시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소속 하에 설치함

○ 회관 운영에 따른 사업 등은 서대문구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밖의 지역까지 확대 실시할 수 있음

○ 회관은 지역주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 충족과 접촉기회의 확대를 도모하는 문화행사 등을 개최하고, 여가선용과 능력개발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교양교육 및 취미교육을 실시함

3) 「서대문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제39조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 문화예술단체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구립 문화예술단체의 종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 문화예술단체 (이하 “예술단체”라 한다)에는 합창단, 교향악단, 극단 등(이하 “각 예술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음

○ 각 예술단에는 단장, 지휘자, 연출자, 반주자 등(이하 “지휘자 등”이라 한다)을 포함한 전속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비전속단원(객원)을 둘 수 있음을 규정함

□ 각 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구청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4) 「서대문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구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하고 구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함

□ 지역의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여건 조성

○ 지역의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임

□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참여한 구민에게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함

3. 정부와 지자체의 생활체육·문화예술 운영 방향

가. 윤석열 정부 체육분야 국정운영 방향

1) 과제 목표

- ☐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 지원, 스포츠 인프라 확충 등으로 스포츠 저변 확대
- ☐ 국가 위상에 걸맞은 전문체육 지원 강화로 스포츠 경쟁력 강화
- ☐ 스포츠 R&D 확대를 통한 스포츠 산업 육성, 스포츠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도모
- ☐ 국제스포츠 인재 양성, ODA 체계화로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위상 제고

2) 주요내용

- ☐ (스포츠기본권 보장)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 지원, 운동하는 국민께 혜택 제공(스포츠 마일리지 및 소득공제)을 위한 체육시설 기반 체력인증센터 확충, 체육인이 참여하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로 개편
- ☐ (전문체육 환경 개선) 국가대표 위상 강화 및 실업팀 지원 확대 등 전문체육 육성 강화, 체육발전 공헌에 대한 영예 제고를 위한 훈포장 확대, 공제사업 추진 등 체육인 복지 체계 구축
- ☐ (스포츠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 스포츠 중심의 지역 랜드마크 조성, 지역특화 스포츠도시 육성, 스포츠 R&D 지원 확대를 통한 스포츠 산업 육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통합형 체육 환경 구축

- (국제스포츠 경쟁력 및 위상 제고) 글로벌 인재 양성(은퇴선수 경력 경로 개발), 2024 강원 청소년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E스포츠 및 태권도 등 세계에서 사랑받는 국제스포츠 종목 육성

3) 기대효과

- 생활체육 참여율 향상(2021년 60.8% → 2027년 68.5%)
- 스포츠 산업 시장 확대(2021년 51.5조원 → 2027년 100조원)

나. 윤석열 정부 문화예술분야 국정운영 방향

1) 환경변화와 문화정책의 방향

-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 설정
 - 새 정부는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의 국정운영원칙을 기반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 비전으로 설정
 - 문화 분야 국정과제는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11. 국민과 함께하는 일류 문화매력국가를 만들겠습니다’로 설정
 - 문화는 일류 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조건이나 자격으로, 문화로 국민과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스며드는 ‘문화매력 한국’ 지향
- 국정비전 및 국정과제를 반영 ‘자유롭고 공정한 문화매력국가’로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비전 수립
- 청년, 어르신 등 생애주기를 고려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히 고령층이 주체적인 문화활동과 창작을 지원

2) 사회갈등 심화 및 공동체 의식 저하

- ☐ 사회갈등과 격차 완화, 사회 연결 및 관계회복 촉진 등 문화의 사회적 역할 고려
- ☐ 장애인 프렌들리 문화정책 추진

3)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 문화수요 회복세

- ☐ 전 세계적으로 일상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보건,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상회복 기조 확대
- ☐ 일상회복 기조에 따라 국민의 문화누림을 지원하고, 문화누림 격차 완화를 위한 약자 프렌들리 문화정책 추진
- ☐ K-컬처 매력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

4) 비대면 일상화와 기술 발전, 문화표현·누림 방식의 융합 확산

- ☐ 코로나19시기 모든 영역에서 비대면 환경 확산, 이에 따라 비대면 활동의 기반이 되는 다양한 신기술들도 빠르게 개발·확산
- ☐ 메타버스, 생성형 AI 등 기술변화를 반영한 과제 추진 및 이에 대응하는 문화의 역할 모색

다. 서대문구 생활체육·문화예술 분야 정책 운영 방향

1) 민선8기 서대문구 생활체육·문화예술 주요 정책 방향

□ 생활체육·문화예술분야 전략과제인 ‘교육문화포털서대문’ 아래 3대 주요 추진전략과 9개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행복 100% 서대문! >을 비전으로 ‘활력 넘치는 경제상생 서대문’, ‘교육문화 포털 서대문’, ‘평생동행 복지 서대문’, ‘서울의 중심도시 서대문’, ‘주거일등 서대문’ 이라는 4대 전략과제를 바탕으로 구민 삶의 질 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3대 주요 추진력은 책 읽는 도시 서대문, 1등 교육 서대문, 문화체육 활성화이며 이 중에서도 책 읽는 도시 서대문의 실천과제는 대학 도서관 주민 개방 및 전자도서관 조성, 권역별 도서관 신설, 서울시립도서관 분관 설립을 추진 중에 있음

○ 문화체육 활성화 부분에서의 실천과제는 문화체육시설 추가 확충, 생활체육 단체 지원 강화, 청년예술 문화거점 조성을 추진 중에 있음

2) 서대문구 생활체육·문화예술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현황

□ 생활체육·문화예술 관련 유사 조례

○ 서대문구의 생활체육·문화예술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와 서대문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문화예술분야가 중심이 아니더라도 사업 특성상 문화예술분야와 연계할 수 밖에 없는 조례를 포함하여 총 18건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표 30> 서대문구 생활체육·문화예술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구분	내용
조례 (18건)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제1550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제1529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90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조례(제1313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제1186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1550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제1470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550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439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제1578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제1381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50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사용징수 조례(제1486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제1598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50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1449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550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체육진흥조례(제1594호)
시행규칙 (6건)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87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04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직제규칙(제788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64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64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직제규칙(788호)

4. 시사점

가. 지역문화 환경

1) 미래와 전망

- ☐ (도시) 삶의 만족 중시, 라이프스타일 변화
- ☐ (경제) 사회적 경제 확산, 문화를 통한 도시발전
- ☐ (산업) 성장 잠재력 둔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 ☐ (사회) 지역쇠퇴 우려와 일과 삶의 균형 추구
- ☐ (정치) 자치, 분권과 균형발전, 행정혁신과 거버넌스 확대

2) 지역문화 환경

- ☐ (예술) 문화향유의 다변화 속 다원, 융복합, 생활예술 등 문화예술의 범위 확대, 자율성/다양성/창의성 강조
- ☐ (체육)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일과 생활 양립 확대에 따라 건강과 여가를 위한 체육에 관심 고조
- ☐ (지역)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과 가치 증진 및 자치와 분권의 강조

3) 생활체육·문화예술 정책의 변화

- ☐ 생활체육과 문화예술 모두 제3자 입장의 관전에서 직접 누리는 참여자로서 향유 중심으로 변화

□ 지방자치제도의 시행과 지역행정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요구 변화

○ 생활체육문화예술 전문행정 기관인 이른바 지방체육회(시군구체육회 포함) 그리고 문화예술위원회 및 기초·광역문화재단 설립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이는 민간의 자율성 및 지역의 특성화를 강조하는 것으로 최근의 지역 특성화를 강조하는 정책과 그 결을 같이 하고 있음

나. 정책환경

1) 서울특별시 체육진흥조례, 생활체육진흥조례, 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시민의 체육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을 규정

○ 체육진흥조례의 경우는 ‘서울특별시 체육진흥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육성지원, 시설 설치, 생활체육 동호인의 육성 및 지원, 자치구 생활체육시설의 설치지원, 장애인 체육의 진흥을 위한 육성지원과 그 외에 체육인의 인권 등을 규정함

○ 생활체육진흥조례는 범시민 체육생활화운동 전개를 위해 생활체육 행사 개최,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지원 및 기타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함을 규정하고 있음

○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 사용료, 입장료 징수와 체육시설의 위탁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2) 제2차 서울특별시 문화진흥시행계획(2020~2024)

- 지역문화진흥법과 서울특별시 문화도시기본조례에 근거하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특별시의 지역문화 진흥정책의 목표와 비전, 정책과제 제시를 추진
 - 이를 위해 서울형 생활문화 활성화, 권역별 거점형 예술교육센터를 건립하고 예술 생태계 자생력 강화, 장르별 종합발전계획 수립, 문화시설 건립 및 리모델링 지원, 역사문화자원의 진정성 있는 발굴 보존 등을 추진하고 있음

다. 소결

-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생활체육 혹은 문화예술시설, 지도자, 프로그램 등 공급자적 생활체육·문화예술 정책 패러다임에서 정책 수혜를 받는 수혜자적 관점으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임
-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체육·문화예술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북아현문화예술센터, 공동체육관, 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 및 야외운동시설 등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 강화와 이들을 위한 연령별·생애주기별 세부 프로그램 활용이 필요
 - 정책 수혜자인 구민들의 체육 및 문화예술활동 요구와 참여 여건 맞춤형 생활체육·문화예술에 대한 정보, 시설, 지도자 프로그램 접근성 등에 기반 한 촘촘한 정책 추진이 필요함

- 최근 스포츠클럽과 생활체육, 생활문화동호회와 문화예술에 관한 관심의 고조에 따라 정부의 생활체육과 문화예술정책이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임
 - 생애주기별 생활체육·문화예술 정책 추진은 「국민체육진흥법」, 「문화기본법」 등이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어 추진되는 정책환경에도 부합
- 구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맞춤형 생활체육문화예술 정책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구민의 생활체육·문화예술 참여 형평성 보장이 필요함
 - 서대문구만의 생활체육과 문화예술 진흥에 중점을 둔 계획의 별도 수립이 필요
 - 서대문구 생활체육·문화예술진흥 종합계획을 인간의 생애주기별 수혜자 요구에 부합도록 유소년기, 청소년기, 성인기, 은퇴기 이후로 구분하여 수립
- 서대문구 노년층 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인구를 고려한 생활체육·문화예술 정책수립 및 운영이 필요
-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및 삶의 만족도가 강조되면서, 전 연령층의 일상적인 생활체육·문화예술 참여 문화 확산에 대응
 -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가 출현하고 있음에 따라 커뮤니티에 대한 욕구 증가가 예상되고, 다문화 가정의 증가 등 인구구성이 다양화되는 추세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함
 - 다양한 배경 및 환경에 놓인 구민들 각자의 여건에 맞는 생활체육·문화예술 프로그램 요구에 따라 다양한 시간비용·종목기능의 생활체육·문화예술프로그램 수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이 전망됨
 - 생애주기별 개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통합적 복지, 수요자 중심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체감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등의 관점에서 생활체육·문화예술 복지정책 추진이 필요

□ 시설간 연계성이 떨어지는 상호 독자 프로그램 운영을 지양하고 상호 복합적인 연계프로그램 모색이 필요

○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어느 분야와 연계하더라도 어색하지 않으므로, 문화예술분야의 적극적인 협업 모델 개발이 시급함

○ 서대문구가 보유하고 있는 역사문화자원은 다른 어느 자치구에 비해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음. 이를 생활체육 및 문화예술과 연계해 볼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구상이 필요함

○ 특히, 분절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개별화된 사업을 통제하고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서대문구의 가장 큰 장점인 대학 연계 협력 모델 개발이 시급함

○ 대학 및 청년문화로서 서대문구는 이미 신촌이라는 지역이 홍대와 함께 최상위의 이미지를 보유하고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간에 대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운영할 조직이 부재하다는 것이 최대의 단점으로 판단됨

제 5 장

주요 사례분석

1절 서울특별시 22개 자치구 현황 분석

2절 체육 부문 운영 사례

3절 문화예술 부문 사례

4절 서울특별시 자치구 문화재단의 유형 분석

V. 주요 사례분석

1. 서울특별시 22개 자치구 현황 분석

가. 자치구 예산

1) 체육 예산

□ 서울특별시 22개 자치구 중 체육 예산은 강동구가 가장 많았으며, 서초구가 가장 적음

○ 22개 자치구의 체육 예산을 살펴보면, 강동구가 총예산 대비 21,724,305천 원(2.21%)으로 강동구가 가장 많은 예산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가장 낮은 예산비율은 서초구로 총예산 대비 0.49%인 4,137,987천 원인 것으로 나타남

□ 1인당 체육 예산은 중구가 가장 많았으며, 서초구가 가장 적음

○ 서울특별시 22개 자치구의 인구에 따른 1인당 체육 예산은 평균 34.56원으로 나타났으며, 인구 1인당 체육 예산이 가장 많이 책정된 자치구는 중구로 77.17원인 것을 알 수 있음

○ 그 외 인구 1인당 체육 예산이 가장 적은 자치구는 서초구이며 서초구 구민 1인당 체육 예산은 10.12원임

○ 서대문구의 1인당 체육 예산은 33.76원이며, 22개 자치구 평균인 34.56원보다는 적으나 인구수가 가장 유사한 도봉구의 20.78원에 비해서는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31> 서울특별시 22개 자치구의 체육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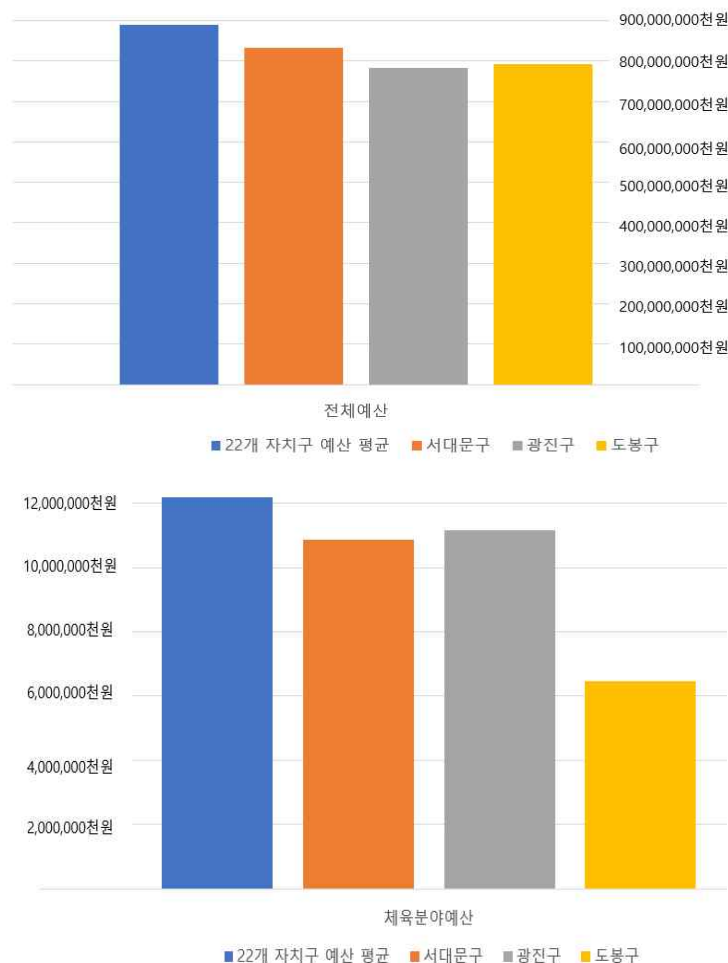
(단위 : 천 원, %)

연번	자치구명	총예산	체육 예산	총예산 대비 체육 예산 비율	자치구 인구 수	1인당 체육 예산
1	강남구	1,284,663,321	19,177,379	1.49	542,327	35.36원
2	강동구	980,337,280	21,724,305	2.21	463,005	46.92원
3	강북구	889,272,211	6,842,006	0.77	295,773	23.13원
4	구로구	908,750,000	14,190,239	1.56	417,774	33.97원
5	금천구	710,356,657	9,293,862	1.31	242,567	38.31원
6	관악구	971,494,846	13,171,538	1.36	502,430	26.22원
7	광진구	782,696,259	11,159,094	1.43	350,820	31.81원
8	노원구	1,227,764,026	17,847,864	1.45	504,641	35.37원
9	도봉구	791,953,062	6,469,832	0.82	311,386	20.78원
10	동대문구	797,790,646	5,180,183	0.65	355,667	14.56원
11	동작구	800,130,106	6,842,006	0.86	390,843	17.51원
12	마포구	778,400,207	13,215,132	1.70	376,285	35.19원
13	서초구	853,012,128	4,137,987	0.49	408,753	10.12원
14	성동구	698,950,394	20,347,182	2.91	286,564	71.00원
15	성북구	965,051,487	14,142,961	1.47	441,065	32.07원
16	송파구	1,175,203,187	11,669,258	1.00	662,872	17.60원
17	양천구	909,160,272	17,012,699	1.87	441,517	38.53원
18	영등포구	829,319,830	14,497,254	1.75	398,842	36.35원
19	은평구	1,087,000,000	9,797,220	0.90	467,295	20.97원
20	종로구	524,310,805	10,403,586	1.98	151,349	68.74원
21	중구	575,633,115	10,190,969	1.77	132,054	77.17원
22	종랑구	1,016,270,056	11,321,393	1.11	389,316	29.08원
평 균		888,978,177	12,201,331	1.40	387,870	34.56원
서대문구		832,012,773	10,860,088	1.31	321,726	33.76원

출처 : 각 자치구별 홈페이지 자료를 재구성 하였음

□ 인구 대비 및 체육 예산 비교

- 서대문구의 경우 인구는 321,726명으로 광진구(350,820명)과 도봉구(311,386명)와의 비교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먼저, 자치구 총 예산에 대한 비교 결과, 서대문구는 22개 자치구 평균 888,978,177천 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광진구와 도봉구의 예산에 비해서는 많은 832,012,773천 원인 것을 알 수 있음
- 체육 예산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22개 자치구의 평균은 12,201,331천 원이었으며, 서대문구의 경우, 도봉구의 체육 예산 보다는 많으나 광진구에 비해서는 적은 것으로 조사됨



[그림 27] 서울특별시 22개 자치구와 서대문구의 전체 예산 대비 체육 예산 비율 비교

2) 문화예술 예산

□ 서울특별시 22개 자치구 중 문화예술 예산이 가장 많은 곳은 송파구이며, 반대로 예산이 가장 적은 자치구는 양천구로 나타남

○ 자치구 총예산 대비 송파구가 8.49%(99,439,919천 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반대로 가장 낮은 예산비율은 양천구로 총예산 대비 0.58%인 5,290,175천 원인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송파구의 경우 몽촌토성 등 문화재 관리 부분의 예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단순 문화예술 예산으로만 추계하였으므로, 해당 예산에 대한 오류가 있을 수 있음

○ 서대문구의 자치구 총예산 대비 문화예술 예산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22개 자치구 평균은 1.72%인데 반해 서대문구는 1.27%로 22개 자치구 평균에 0.55%나 적은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서대문구의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예산 확보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됨

□ 1인당 문화예술 예산은 송파구를 제외하고 중구가 가장 많았으며, 강북구가 가장 적음

○ 서울특별시 22개 자치구의 인구에 따른 1인당 문화예술 예산을 살펴보면 22개 자치구 평균은 51.67원으로 분석됨

○ 22개 자치구 중 송파구를 제외하고 1인당 문화예술 예산이 가장 많은 곳은 중구로 111.10원이며, 반대로 가장 적은 자치구는 강북구로 23.47원으로 나타남

○ 서대문구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22개 자치구 평균액인 51.67원보다 적은 32.89원으로 분석됨

<표 32> 서울특별시 22개 자치구의 문화예술 예산

(단위 : 천 원, %, 명)

연번	자치구명	총예산	문화예술 예산	총예산 대비 문화예술 예산 비율	자치구 인구 수	1인당 문화예술 예산
1	강남구	1,284,663,321	32,278,984	2.51	542,327	59.52원
2	강동구	980,337,280	20,505,565	2.09	463,005	44.29원
3	강북구	889,272,211	6,940,390	0.78	295,773	23.47원
4	구로구	908,750,000	17,531,541	1.93	417,774	41.96원
5	금천구	710,356,657	11,383,435	1.60	242,567	46.93원
6	관악구	971,494,846	15,370,752	1.58	502,430	30.59원
7	광진구	782,696,259	26,027,298	3.33	350,820	74.19원
8	노원구	1,227,764,026	27,261,157	2.22	504,641	54.02원
9	도봉구	791,953,062	18,712,155	2.36	311,386	60.09원
10	동대문구	797,790,646	8,800,824	1.10	355,667	24.74원
11	동작구	800,130,106	9,216,742	1.15	390,843	23.58원
12	마포구	778,400,207	13,865,085	1.78	376,285	36.85원
13	서초구	853,012,128	15,862,509	1.86	408,753	38.81원
14	성동구	698,950,394	9,447,792	1.35	286,564	32.92원
15	성북구	965,051,487	13,541,572	1.40	441,065	30.70원
16	송파구	1,175,203,187	99,439,919	8.49	662,872	150.01원
17	양천구	909,160,272	5,290,175	0.58	441,517	11.98원
18	영등포구	829,319,830	21,027,576	2.54	398,842	52.72원
19	은평구	1,087,000,000	21,771,116	2.00	467,295	46.59원
20	종로구	524,310,805	12,469,973	2.38	151,349	82.39원
21	중구	575,633,115	14,671,660	2.55	132,054	111.10원
22	중랑구	1,016,270,056	19,493,292	1.92	389,316	50.07원
평 균		888,978,177	15,294,463	1.72	387,870	51.67원
서대문구		832,012,773	10,581,902	1.27	321,726	32.89원

출처 : 각 자치구별 홈페이지 자료를 재구성 하였음

나. 문화재단의 역할

1) 문화예술 예산 확보

□ 지자체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 문화재단이 설립된 22개 자치구의 예산을 살펴본 결과, 양천구는 자치구의 문화예술 예산 대비 250.55%나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양천문화재단은 ‘양천문화회관’과 함께 12개의 도서관을 운영 중이며, 양천구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다양한 국고 및 지자체 보조사업에 참여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그 외 중구의 경우에는 115.63%에 달하고 있으며, 성동구의 경우에도 자치구의 문화예술 예산 대비 102.79%에 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재단이 적극적으로 정부 및 광역지자체의 국고보조 사업을 유치하여 구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에 힘쓰고 있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임
 - 중구는 충무아트홀 운영을 통한 수익으로 예측되며,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충무아트홀은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 성남아트홀과 같은 전국 5대 극장이면서 뮤지컬 전문 극장으로 극장 가동률이 100%에 육박하며 대부분이 극장의 운영 수익으로 판단됨
 - 성동문화재단의 경우 2023년 예산을 국비 234,000천 원, 시비 424,000천 원 및 보조금 2,000천 원 유치를 목표로 하고있는 결과이며, 지자체의 출연금 이외에도 위탁금 등의 사업비를 구성하고 있음

<표 33>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문화예술 예산 대비 문화재단 예산 비율

(단위 : 천 원, %)

연번	자치구명	총예산	문화예술 예산	문화재단 예산	문화예술분야 대비 문화재단 예산 비율
1	강남구	1,284,663,321	32,278,984	31,851,010	98.67
2	강동구	980,337,280	20,505,565	11,867,918	57.88
3	강북구	889,272,211	6,940,390	2,466,869	35.54
4	구로구	908,750,000	17,531,541	6,222,565	35.49
5	금천구	710,356,657	11,383,435	8,395,000	73.75
6	관악구	971,494,846	15,370,752	13,018,002	84.69
7	광진구	782,696,259	26,027,298	3,726,037	14.32
8	노원구	1,227,764,026	27,261,157	11,014,325	40.40
9	도봉구	791,953,062	18,712,155	10,601,058	56.65
10	동대문구	797,790,646	8,800,824	2,374,000	26.97
11	동작구	800,130,106	9,216,742	8,629,693	93.63
12	마포구	778,400,207	13,865,085	10,991,307	79.27
13	서초구	853,012,128	15,862,509	12,516,381	78.91
14	성동구	698,950,394	9,447,792	9,709,000	102.79
15	성북구	965,051,487	13,541,572	4,782,076	35.31
16	송파구	1,175,203,187	99,439,919	12,160,096	12.23
17	양천구	909,160,272	5,290,175	13,254,777	250.55
18	영등포구	829,319,830	21,027,576	12,088,000	57.49
19	은평구	1,087,000,000	21,771,116	5,247,996	24.11
20	종로구	524,310,805	12,469,973	6,675,123	53.53
21	중구	575,633,115	14,671,660	16,964,899	115.63
22	중랑구	1,016,270,056	19,493,292	9,382,929	48.13
평 균		888,978,177	20,041,341	10,179,048	67.09

출처 : 각 자치구별 홈페이지 자료 및 각 재단별 홈페이지 자료를 재구성 하였음

2)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¹⁾

□ 익산문화관광재단 사례

- 전북발전연구원의 연구자료에 의하면, 익산문화관광재단의 경우 2010년 총 사업비는 540백만 원에서 2018년 4,414백만 원으로 8년 간 5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역시 2014년 대비 2018년은 20.5%가 증액됨으로서 지역의 문화전문인력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옴
- 이는 재단이 익산시로부터 지원되는 출연금의 증액보다는 인건비와 운영비 이상의 재원을 외부(중앙정부 및 광역지자체)로부터 확보하였다는 점을 의미하며, 재단설립이 지역의 부족한 문화예술 예산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 새로운 문화재원을 확보하는 마중물이 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임
- 또한 국가 및 도비 지원 공모사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에서 예산 혹은 인력충원 등의 문제로 추진되지 못했던 새로운 문화정책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면서 사업의 영역이 확장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옴

□ 전주문화재단의 예술인 간접지원 사례

- 예술인에게 직접 활동예산을 지원하는 방식보다 재단을 통하여 지역문화 전반을 진흥시키거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통한 예술인의 간접지원 방식이 지역경제에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음을 증명하였음

1) 전북연구원(2019) 「전라북도 시군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기초연구」의 자료를 요약 발췌함.

- 전주문화재단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적용한 문화예술지원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주문화재단의 출연금 및 보조금 사업의 총 집행액(투입액) 46억 7천 5백만 원 대비 총 생산유발효과는 약 86억 9천 1백만 원, 총 부가가치유발효과는 38억 1천 9백만 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총 취업(고용)유발효과는 213명, 총 소득유발효과는 17억 5천 4백만 원, 조세유발효과는 2억 7천 6백만 원의 경제효과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었음

<표 34> 전주문화재단 사업의 경제효과

(단위 : 백만 원, 명)

구분	출연금 사업(1)	보조금 사업(2)	총 효과 (1)+(2)
생산유발효과	4,090.82	4,600.67	8,691.49
부가가치유발효과	1,797.85	2,021.92	3,819.77
소득유발효과	825.87	928.80	1,754.67
취업유발효과(명)	100.35	112.85	213.20
조세유발효과	130.27	146.51	276.78

2. 체육 부문 사례

가. 양구군

1) 양구군체육회

☐ 설립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 주요사업

- 회원종목단체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 우수선수 및 지도자의 육성 등 전문체육 진흥
- 스포츠클럽, 동호인조직 활동의 지원, 프로그램 보급 등 생활체육 진흥
-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
- 전국대회 등 상급대회 출전 및 지원

☐ 조직구성



[그림 28] 양구군체육회 조직도

출처 : 양구군체육회 홈페이지

□ 사업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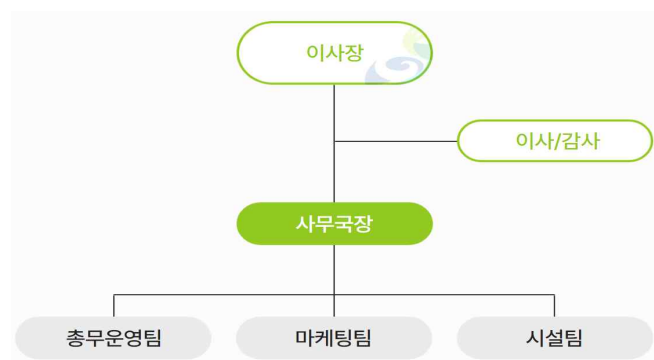
- 양구군 내 회원단체(협회 및 연맹)의 관리
- 체육분야를 전문체육분야와 생활체육분야로 나누어 운영
 - 전문체육분야 : 도민체전, 생활체전, 어르신체전 등의 출전관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체육우수선수 육성지원
 - 생활체육분야 : 각종 군민대상 체육교실운영,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운영, 우수체육종목육성, 청소년 스포츠 클럽
- 시설중심운영이 아닌 군민대상 체육 프로그램(장애인 포함) 및 체육관련 인력 양성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

2) 양구군 스포츠재단

□ 설립목적

- 양구군 스포츠산업 발전 및 스포츠마케팅 진흥을 도모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
- 전국 최고의 스포츠 중심도시 이미지 제고
- 2022년 9월 1일 출범

□ 조직구성



[그림 29] 양구군 스포츠재단의 조직도

출처 : 양구군스포츠재단 홈페이지

□ 사업특성

- 사업의 대부분이 체육시설, 체육관, 청소년시설 및 여가시설의 운영에 집중되어 있어 기존의 ‘양구군시설관리공단’과 역할이 중복되는 양상임
- 그 외 여러 스포츠 종목에 대한 전지훈련과 스포츠 관련 대회 유치 등을 통해 양구군의 지역경제활성화 도모에 집중하고 있는 경향이 있음

나. 체육관련 재단 실패사례

1) 춘천시 체육진흥공단

□ 설립

- 2008년 「춘천시 체육진흥재단 설립·운영 조례」안 제정 후, 2009년 6월 1일 설립
- 춘천시체육회를 춘천시체육진흥공단에 통합운영

□ 주요사업

- 체육진흥 재원의 확보와 증식
- 생활체육·학교체육·엘리트 체육의 육성 지원
- 체육시설의 건립 및 운영
-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에 의한 체육진흥사업
- 그 밖의 진흥재단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 위 각 호와 관련된 부대사업과 시설의 임대 및 관리 운영

☐ 재단의 해산

- 2014년 11월 20일부터 해산절차를 진행하여 2015년 3월 27일 춘천시장이 「춘천시 체육진흥재단 설립·운영 조례 폐지안」을 춘천시의회에 제출함에 따라 가결되어 최종 해산됨
- 체육진흥재단의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 경영 효율성이 저조하였음
- 초기 비정규직 위주 채용으로 경영 효율성이 높았으나, 이후 시설확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인하여 경영 효율성이 악화됨
 - 재단은 출연기관으로서 시 출연금이 우선적인 예산이나 시설인력의 대거 채용으로 인해 출연금으로도 인건비 감당이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됨

2) 강릉시 체육진흥재단

☐ 설립

- 2005년 강릉 경포골프장 부지매각과 관련하여 (주)두산이 제공한 20여억 원의 체육발전기금을 모태로 하여 강릉시 체육진흥재단을 설립

☐ 주요사업

- 지역 내 인사 및 기업체 등의 기부를 통해 2016년까지 재단의 기금규모를 50억 원으로 확대 추진
- 기금의 은행 예치를 통해 발생한 이자 9,000여만원으로 학교 운동부 및 실업팀 육성, 시민체육시설 확충 및 재정지원, 체육진흥 연구활동 등을 진행

☐ 재단의 해산

- 2019년 7월 저금리의 영향으로 기금 예치 이자를 통한 체육진흥 등 목적 사업 수행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재단의 정산 절차 진행하였음

3. 문화예술 부문 사례

가. 성동문화재단

1) 개요

☐ 출범 : 2015년 7월 1일

☐ 전략목표

○ 문화로 열려가는 한국의 브루클린, 스마트문화도시 성동

☐ 핵심정책

○ 포용과 혁신의 지역문화 기반 조성

○ 융복합 문화복지 실현

○ 소통과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경영 실현

☐ 2023년 예산 : 9,709백만 원

구분	금액
자치구 출연금	2,095백만 원
자치구 위탁금	6,954백만 원
국비	234백만 원
시비	424백만 원
보조금	2백만 원

2) 조직

☐ 1센터 1실 2본부 8팀

□ 직원

○ 정원 : 197명

－ 임원 : 1명, 일반직 : 134명, 보육직 38명, 사회복지직 : 6명, 무기계약직 : 18명



[그림 30] 성동문화재단 조직도

출처 : <2023년 성동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

3) 운영시설

☐ 문화시설 : 6개소

- 성동문화회관(소월아트홀), 성수문화복지회관(성수아트홀), 왕십리 갤러리 허브(비트플렉스 4층 야외테라스), 다락옥수(옥수역 교각 하부), 성동책마루(성동구청 1층), 서울숲생활문화센터(서울숲복합 문화체육센터 4층)

☐ 구립도서관 : 7개소

- 성동구립도서관, 성동구립 금호도서관, 성동구립 용답도서관, 성동구립 무지개도서관, 성동구립 청계도서관, 성동구립 성수도서관, 성동구립 숲속도서관

☐ 보육 및 돌봄 시설 운영 : 10개소

- 용답어린이집, 왕십리하나어린이집, 서울숲아이꿈누리터, 스위첸 아이꿈누리터, 왕십리도선동아이꿈누리터, 사근동아이꿈누리터, 금호대우아이꿈누리터, 꽃재아이꿈누리터, 옥수중앙아이꿈누리터, 성수2가1동아이꿈누리터

☐ 청소년시설 운영 : 3개소

- 성동청소년문화의집, 성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동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4) 재단의 역할

☐ 성동구 문화예술 예산 확보의 첨병

- 성동구는 자치구 예산 대비 문화예술 예산 비율은 1.35%에 불과하나, 성동문화재단의 예산은 자치구 문화예술 예산을 초과하고 있음

- 즉, 성동문화재단은 재단의 출연금으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고보조사업, 광역보조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공모함으로써 예산 투입대비 산출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자치구 중 하나 임

나. 마포문화재단

1) 개요

☐ 미션

- 창조적 역량과 소통을 통한 지역발전과 주민 문화복지 증대

☐ 비전

- 문화로 더 행복한 도시, 마포

☐ 4대 목표

- 지속가능한 경영시스템 구축
- 마포주민 문화기본권 충족
- 마포 지역문화육성
-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실현

☐ 예산

- 12,857,142천 원(재정자립도 54%)

2) 조직

☐ 1본부 1센터 6부



[그림 31] 마포문화재단 조직도

출처 : (재)마포문화재단 홈페이지

3) 운영프로그램

□ 지역상생 마포 M 문화축제 및 이벤트

○ 마포형 M 시리즈 문화축제 및 이벤트 브랜드화로 문화예술을 통한 문화관광 활성화 및 지역상생에 기여

○ 문화축제 3건, 공모전 2건

- 문화축제 : M클래식 축제, M국악 페스티벌, M랩댄스 페스티벌
- 공 모 전 : 한글날 기념공모, 구민 일상문화 영상공모

□ 장르별로 안배한 다양한 공연전시

○ 정상급 아티스트들의 다양한 장르별, 구민 맞춤 공연전시로 마포 구민 문화향유 증대

- 다양한 장르별 독창적 기획·대관 공연 운영
- 구민 맞춤형 착한 공연 및 착한 전시 운영
- 마포구민 대상 대규모 문화행사 개최
- 임산부 할인, 75세 이상 구민 초청공연, 소외계층 객석나눔 등 구민 접근성 향상

□ 구민의 건강한 일상문화를 일구는 체육문화

○ 세대별 구민 수요를 반영한 생활체육·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으로 구민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및 문화여가 활동 촉진

- 구민의 건강한 일상을 지원하는 마포아트센터 생활체육 강좌 운영
- 구민의 문화적 일상을 지원하는 마포아트센터 문화예술 강좌 운영
- 고객 모니터단 운영 등 고객 서비스 강화
- 제휴처 발굴로 구민 회원 혜택 개발 및 체육동 벽면 광고 유치
- 관내 산책코스 활용, 소상공인과 반려가족이 함께하는 걷기 행사 추진

□ 광장 프로그램 등 임직원 사회공헌

○ 공공문화기관으로서 재단 임직원 지역사회 역할강화 및 문화예술 활용 사회공헌 활동 발굴

- 문화예술·생활체육 등 아트센터 광장 프로그램 확대 실시
- 관내 어르신 대상 <실버 헬스케어>

□ 마포 전역 구민 생활문화 활성화

○ 마포지역 청소년, 성인, 어르신 등 세대별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생활예술 활동 지원 및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관내 생활예술 동아리 지원사업 <꿈의 무대>
- 관내 직장인 및 감정 노동자 대상 치유·힐링 프로그램 운영
- 관내 학교 및 학교밖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 마포구민이 마포의 풍경과 이야기를 매거진으로 담는 <마포사진학교>

□ 마포 독립뮤지션을 지원하는 서울마포음악창작소

○ 마포지역 신진 뮤지션을 발굴하여 성장을 지원하는 독립 뮤지션 인큐베이팅 거점 운영

- 독립뮤지션 공연제작 지원(연간 12회)
- 독립뮤지션 음반제작 지원(연간 8팀)
- 마포구민 대상 창작활동 및 음반발매 지원(연간 3팀)
- CJ ENM 공동 기획, 신진 작곡가 발굴, 육성 프로그램 <오픈뮤직>
- 뮤지션 네트워킹 및 라이브홀·녹음실 대관 등

□ 구민 문화접근성 강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

○ 마포문화재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홍보마케팅으로 브랜드 파워 제고 및 마포구민의 정보 접근성 강화

- 재단 정책 및 사업 언론 홍보
- 다각적 온라인 홍보
- 구청 및 지역매체 연계, 구민대상 온-오프라인 홍보
- 문화예술 마케팅

4) 재단의 역할

☐ 생활체육과 문화예술을 접목하여 시민의 접근성 향상

○ 마포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마포아트홀’ 내에 대극장과 소극장 및 전시장이라는 문화재단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뿐만 아니라, 스포츠센터를 함께 운영하며 구민의 일상적 접근에 노력하고 있음

☐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재원확충

○ 체육시설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문화예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선순환적 운영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전국의 문화재단이 고민하고 있는 재원확충을 통한 지자체로부터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의 긍정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됨

다. 강북문화재단

1) 개요

☐ 출범 : 2017년 7월

☐ 설립목적

○ 강북구 문화예술의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

☐ 미션

○ 문화와 예술의 향기가 넘치는 강북

☐ 비전

○ 문화예술 감성 공유, 강북문화생태계 구축

☐ 핵심가치

- 문화로 HAPPY
- 문화로 WELFARE
- 문화로 POWER

☐ 2023년 예산 : 2,466,869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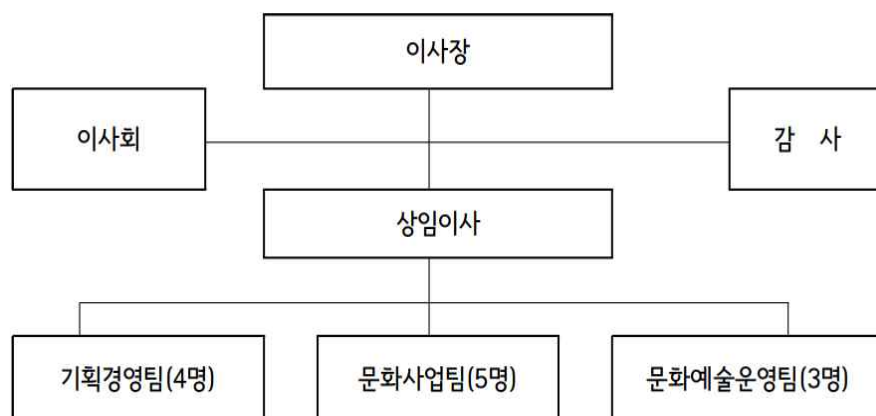
- 자치구 출연금 : 2,058,283천 원
- 자치구 위탁금 : 408,586천 원

2) 조직

☐ 3팀

☐ 직원

- 정원 : 13명
 - 임원 : 1명
 - 일반직 : 12명



[그림 32] 강북문화재단 조직도

출처 : <2023년 강북문화재단 경영목표 및 사업운영계획>

3) 운영프로그램

☐ 문화예술 활성화 : 7개 프로그램

- 강북문화재단 기획공연, 강북문화재단 기획전시, 찾아가는 문화공연, 어린이문화예술프로그램, 즐거운 입학 선물, 강북문화재단 소극장 운영, 우이천 야외음악회

☐ 지역문화예술진흥 : 5개 프로그램

- 구립예술단체 지원, 강북문화제, 지역문화예술 공모사업, 지역예술단체지원 및 보조금사업 매칭비, 강북문화대학 운영

☐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 : 1개 프로그램

- 문화회원제

4) 재단의 역할

☐ 강북구 문화예술 예산 자체의 아쉬움

- 강북구는 자치구 총 예산 대비 문화예술 예산이 0.78%에 지나지 않는 문화예술분야에 대해 매우 취약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음
특히 도봉구 2.36%, 노원구 2.22% 및 성북구 1.40% 등 주변 자치구에 비해 문화예술 예산 비율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더욱이 문화예술 예산 대비 문화재단 예산 비율 역시 35.54%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자치구 총 예산 대비 문화예산 비율 자체가 적으므로 생기는 착시효과로 실제 액수는 매우 적은 금액으로 파악됨

□ 문화시설 운영 관련

- 강북문화재단은 서울특별시 22개 문화재단 중 유일하게 시설 운영을 하지 않고 문화예술프로그램만을 운영하는 재단임
- 주 사무소는 ‘강북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강북구 문화예술회관’ 내에 ‘강북문화원’과 함께 위치하고 있으므로 인해 자체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업이나 기획 공연 사업을 실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 강북문화재단이 강북문화예술회관의 대공연장과 전시실을 사용할 경우, 강북구시설관리공단에서 대관 형태로 진행해야 함
- 때문에 인력 역시 상임이사(임원)을 포함하여 13인에 불과하여 그동안 지역 내 유일한 문화예술기관으로서 역할이 미미하였으나, 최근 소프트 파워를 보여주며 지역에서 풀뿌리 문화력을 키워가는 중임

4. 서울특별시 자치구 문화재단의 유형 분석

가. 사업유형별 분석

1) 사업유형 구분을 위한 Factor Analysis

□ 사업유형별 예산을 Factor Analysis를 실시한 결과, 4개 요인으로 분석됨

○ Factor 1에는 문화교육과 예술지원, Factor 2에는 공연전시와 문화공간, Factor 3에는 도서관과 축제이벤트, Factor 4에는 지역문화와 관광홍보로 분류됨

<표 35> 사업유형별 예산을 Factor Analysis를 통해 분석한 결과

구분	Component			
	Factor 1 (문화교육/예술지원)	Factor 2 (공연전시/문화공간)	Factor 3 (도서관/축제이벤트)	Factor 4 (지역문화/관광홍보)
예술지원	.917	-.063	-.199	.027
문화교육	.895	-.117	.330	-.035
공연전시	-.081	.911	-.016	-.089
문화공간	-.082	.764	.078	-.041
도서관	-.210	.156	.815	-.131
축제이벤트	.424`	-.119	.764	.014
지역문화	-.089	-.213	-.026	.949
홍보마케팅	.441	.489	-.302	.614
<i>Eigenvalue</i>	2.084	1.753	1.493	1.306
<i>Ratio of Variance</i>	26.054	21.916	18.663	16.330
<i>Ratio of Cumulative</i>		47.969	66.632	82.962

Extraction Method :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Rotation Method : Varimax with Kaiser Normalization

○ Factor 1은 문화교육이 주로 예술가나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활동과 연계되어 추진되는 상황이며, Factor 2는 공연전시를 위해서는 문화공간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음. Factor 3은 최근 도서관 시설을 운영하는 재단이 늘어남에 따라 도서관과 연계한 축제이벤트의 관련성을 보여줌. 마지막으로 Factor 4는 지역문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재단의 홍보마케팅이 중요함을 나타냄

2) 재단여건과 사업유형요인에 대한 상관분석

□ 위의 Factor Analysis를 통해 추출된 4개의 요인과 자치구별 인구수, 재단의 예산 및 재정자립도, 재단 운영기간 및 시설 수, 지자체 총예산과 재단의 예산 등과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음

<표 36> 재단여건과 사업유형요인의 상관관계

구분	문화교육/ 예술지원	공연전시/ 문화공간	도서관/ 축제이벤트	지역문화/ 홍보마케팅
자치구 인구 수	-.033	.242	.102	-.061
재단운영 시설 수	-.020	.376*	.063	.348**
재단 운영기간	.298*	-.098	-.065	.003
재정자립도	.368**	.196	.085	-.197
재단 예산	.019	.551***	.446**	.112
자치구 총예산	-.155	.543***	-.010	-.197

$p < 0.1^*$, $p < 0.05^{**}$, $p < 0.01^{***}$

□ 문화교육, 예술지원은 재단 운영기간과 재정자립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이는 재정자립도가 높고 운영기간이 긴 재단일수록 문화교육과 예술지원에 대한 예산 배정이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문화교육, 예술지원과 같은 사업의 전제조건이 지자체 예산의 증액보다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문화재단의 재정자립도라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항임

- 이는 문화교육과 예술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문화재단의 환경, 즉 재정자립도가 전제조건일 수 있음
- 또한 문화교육과 예술지원은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문화예술 정책 방향에 의해 좌우될 수 있으므로, 향후 재단의 여유 자원 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
- 반면, 문화재단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 문화를 통한 장기적인 문화예술정책 추진이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것을 반증하고 있는데 이는 부의 집중현상이 심화되는 일종의 마테효과(matthew effect)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임

○ 최근에 설립된 문화재단에 비해 과거에 설립된 문화재단일수록 장기적인 문화예술 정책 수행을 위한 조직의 전문성과 노하우 축적으로 인해 정책 수행이 더 안정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공연전시, 문화공간은 재단운영 시설 수, 재단예산 및 자치구 총예산과 긍정적인 관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공연전시, 문화공간은 재단운영 시설 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보여짐

○ 재단 예산 및 자치구 예산과의 긍정적 관계를 보이는 것을 살펴 보아도 일정정도 공연전시와 문화공간에 대한 예산확보가 결정적임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재단 예산의 경우 실제 중앙 및 광역단위 공모사업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모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할 것임

- 도서관, 축제이벤트의 경우에는 재단 예산에 의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최근 도서관을 운영하는 재단이 늘어나고 있음에 따른 경향성이 라고 판단됨
 - 예전처럼 도서관을 단순히 책을 읽거나 공부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도서관을 통해 인문적 소양 증진과 문화적인 향유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최근의 추세임을 알 수 있음
- 지역문화, 홍보마케팅은 재단 운영시설 수와 긍정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음
 - 지역문화/홍보마케팅의 경우 재단이 운영하는 시설 수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역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단이 운영하는 시설 수의 중요성을 나타냄
 - 최근 많은 재단에서는 새로운 시설을 건립하기보다는 문화적 도시 재생을 통해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함으로써 재단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는 새로운 인프라 건립이 어려운 서대문구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사료됨

나. 전체현황 분석

1) 지자체 예산과의 관련성

- 강북구, 동대문구 및 광진구 등의 경우와 같이 자치구의 실질적인 사회경제적 수준에 의해 문화재단의 사업규모와 수준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이해됨

- 공연전시 및 축제이벤트 등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재정여건이 좋은 문화재단일수록 기업가주의적 문화정책의 일익을 담당하는 것으로 해석됨
- 이는 지자체의 분권이 강화될수록 심화되거나 확대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되며, 이때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문화재단이 소극적인 문화정책을 추구할 가능성 역시 높을 것으로 예측됨으로 이에 대한 대안 모색이 필요함
- 지자체와 문화재단의 재정여건이 비슷한 경우에도 대상에 대한 사업 규모의 차이가 있거나, 비슷한 시기에 설립된 다른 재단들의 사업이 성장하는 동안 정체 상태를 보이는 재단들의 경우 특별한 전기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현재와 같은 수준을 면치 못할 것으로 판단됨

2) 시설과의 관련성

- 문화재단이 보유한 시설 수가 자치구의 사업예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문화재단이 보유하거나 운영하는 시설 수는 지역 내 문화재단이 다양한 성격의 관리를 맡게 됨으로써 문화재단의 사업 외형 확대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요건임을 보여주고 있음
 - 지역재생 등으로 문화재단이 운영·관리하는 시설이 늘어나게 된다면 지역문화사업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공간 재생 사업과 운영시설의 증가가 문화재단 지역사업의 증가를 견인할 수 있을 것임
 - 공연장이나 문화센터와 같은 인프라가 어느정도 갖추어진 상황에서 사업을 시작한 재단과 기반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최근 설립된 재단의 경우 사업 영역의 확대나 성장이 더디게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됨

3) 조직규모

- 일정 조직규모를 갖추고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재단의 경우, 현재 상대적으로 미흡한 사업 영역이 존재하더라도 지역 여건의 변화나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현재 나타나는 간극을 줄일 가능성, 즉 잠재력을 높은 것으로 판단됨

제 6 장

의견 수렴 결과

1절 의견 수렴 주요 결과

2절 소결

Ⅵ. 의견 수렴 결과

1. 의견 수렴 주요 결과

가. 자문위원회

1) 1차 자문위원회

- 일 시 : 2023. 8. 29.(화) 15:00
- 참석자 : 자문위원 5명 중 4명 참여

2) 2차 자문위원회

- 일 시 : 2023. 10. 27.(금) 13:00
- 참석자 : 자문위원 5명 중 3명 참여

3) 3차 자문위원회

- 일 시 : 2023. 10. 30.(월) 18:00
- 참석자 : 자문위원 중 데이터 분석을 위한 1명만 참여

4) 자문위원회 결과 요약

- ☐ 생활체육문화예술의 복합적 운영은 여러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음
- 체육과 문화예술 사업을 함께 운영한다는 것은 기존의 시설관리 공단의 그것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일반적으로 체육 및 스포츠는 활용도가 높고 건강 관련 관심이 많으나 문화강좌는 그렇지 않음. 공연, 전시 문화향유 부분에 대한 관심이나 활동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므로 문화와 체육을 분리 설립하는 방안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임
- 구청과 의회의 의지가 필요하며, TF가 구성된다면 문화와 체육을 분리해야 할 것임. 그렇지 않다면 문화부분이 취약해질 수 있음
- 기존의 문화재단에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재단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
 - 체육과 문화예술은 주민들의 건강한 삶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유사할 수 있으나 엄밀하게 따져 보자면, 체육은 체력증진이라는 측면이며 문화는 주민의 창의력,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이므로 문화사업과 체육시설 운영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마포문화재단과 강남문화재단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서대문구의 장점을 살린 이슈 메이킹 전략
 - 서대문구의 경우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에서도 가장 많은 9개의 대학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대학과의 연계방안을 반영해야 할 것이며, 체육과 문화재단화 문제는 예산 부분의 장단점을 충분히 숙고한 후, 이슈 메이킹 전략이 필요함
- 여론 형성 및 지역의 의견 수렴 과정 필요
 - 필요하다면 구청 관계자 및 선진 사례 공유를 위한 심포지엄 형태의 진행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임

나. 실무자 FGI

1) 정책 분야

○ 일 시 : 2023. 10. 18.(수) ~ 19(목).

○ 방 식 : 광역단위 이상의 생활체육·문화예술 정책분야 전문가의
설문형식으로 진행

□ 문화체육재단 설립과 관련한 생활체육 및 문화예술 정책분야 전문가 의견은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보임

○ 서울시를 포함한 25개 자치구에 체육과 문화예술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재단은 없으며, 문화재단은 투자출연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립됨

○ 반면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며, 현재 서울시체육회를 포함한 25개 자치구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 2에 따라 시장·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법정·법인화되므로 두 재단의 성격 자체가 다름

○ 자치구에서는 작은 조직으로 재단을 출범시키면서도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쉬운 전략이 되겠지만, 체육과 문화분야를 합쳐서 재단을 설립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듦. 문화와 관광 또는 문화, 도서관도 보기와는 달리 내용상 이질적이지만, 문화와 체육은 그보다 더 이질적으로 보이기 때문임

□ 체육과 문화를 분리한 재단 설립에 대한 의견

- 재단을 설립하는 자치구 입장에서는 공무원의 여러 영역을 민간 재단으로 통합 이관하여 조직 운영의 시너지가 나기를 기대하겠지만, 현재 몇몇 서울의 자치구 문화재단의 현실을 보면 당초 기대했던 통합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는 의문이 있음. 따라서 고유 목적과 성격을 지닌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운영 효율성과 효용성 측면에서 장점을 지닐 수 있을 것임
- 문화는 시민의 자율적인 문화예술활동 진흥이 목적이고, 체육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한 체육인들의 경기력 향상 및 체육 활동권장과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시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 권장이 양립하고 있음
- 시민 대상 체험 프로그램 진행 시 일부 기능이 중복된다고 해서 ‘문화’와 ‘체육’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관을 설립한다면 기관 정체성이 모호해질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정책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체육재단과 문화재단 각각 개별 설립을 전제로 생활체육분야와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FGI를 실시함

2) 생활체육분야 FGI

- 일 시 : 2023. 9. 26.(화) ~ 10. 4.(수)
- 방 식 : 서대문구 생활체육분야 전문가들에게 설문형식으로 진행

□ 서대문구의 환경적 요소 및 체육 인프라 관련 의견

- 서대문구는 서울 중심에 위치한 구 도심으로 입지적 요인이 매우 열악한 환경임

- 서대문구의 태생적인 특성상 도심에 위치하고 산지 지형이 많아 타 구와 비교하여 체육시설이 부족하고 한정되어 있음
- 유효면적이 부족하여 새로운 시설의 체육관이나 시설을 건설할 수 없고 대학교만 9개소로 전체 면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재개발 등으로 생성되는 기부채납 등 면적 외에는 토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대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체육 인프라를 지역 주민과 나누어 사용하는 방식이 가장 좋다고 사료됨

□ 체육재단 설립과 관련해서는 다소 상반된 의견

- (찬성의견) 체육 관련 지원사업의 체계적인 계획과 실천 구청과 구의회 그리고 체육회 등이 가지고 있는 한계적인 사항을 전문적으로 조율 지원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정책을 개발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임
- (반대의견) 현재까지 체육재단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된 바 없어 그 기대효과나 장단점의 검토가 어렵고 시간이 많이 필요한 실정이며 벤치마킹할 만한 사례가 부족한 실정임

□ 체육 분야의 우선 추진 과제

- 체육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추진 및 강화해야 하는 사업 분야로는 1순위가 생활체육센터 등 생활권 체육 거점시설 운영 및 조성이며, 2순위는 서대문구 생활체육인 및 단체의 지원 및 양성으로 나타남

□ 체육 관련 공공기관 설립으로 인한 기대효과

- 서대문구 생활체육 관련 공공기관 설립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서대문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과 서대문구 체육 관련 시설 간 거버넌스 구축으로 인한 운영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문화예술분야 FGI

○ 일 시 : 2023. 9. 26.(화) ~ 10. 4.(수)

○ 방 식 : 서대문구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들에게 설문 형식으로 진행

☐ 서대문구의 문화예술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 서대문구는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비교적 잘 조성되어있으며, 야외 공연 장소 역시 다양한 편임

○ 서대문구가 보유하고 있는 역사자원(독립문, 서대문 형무소 역사공원), 자연생태자원 및 대학교 등은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행사·공연·축제 등을 개최하기에 좋은 환경적 요소를 보유하고 있음

☐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 긍정적으로 일치된 의견

○ 서대문구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공연과 행사들을 아카이빙할 수 있으며,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문화활동들을 한 기관에서 파악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강 및 주력 문화를 지원할 수 있을 것임

○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 문화재단이 없는 몇 개 되지 않는 자치구로 서대문구의 문화예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체계적인 문화예술 사업과 관리를 위한 조직이 필요함

○ 서대문의 문화예술분야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문화재단 설립으로 인한 기대효과

○ 서대문구 문화재단 설립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로는 서대문구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 서대문구 문화예술 시설 간 거버넌스 구축으로 인한 운영 활성화, 서대문구 문화예술 정책 및 사업의 체계적 발전을 기대하고 있음

□ 문화재단의 사업 추진 분야

- 향후 서대문구 문화재단이 추진 및 강화해야 하는 사업 분야로는 문화시설 및 문화자원 간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서대문구 문화예술인 및 단체의 지원 및 양성, 구민 문화예술기획단 등 시민 참여 플랫폼 구축, 서대문구 특화 문화예술시설 활성화 등의 의견이 있었음

4) 관련 기관 실무자 FGI

- 관련 기관으로서 서대문구시설관리공단 실무자의 FGI를 요청하였으나, 요청기한까지 답변을 받을 수 없어 본 연구보고서에는 관련 기관 실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음

2. 소결

- 생활체육과 문화예술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공공지원 조직의 설립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인 것으로 나타남
 - 체육과 문화예술이라는 분야 자체의 이질성으로 인하여 두 분야의 통합이 자칫 각 분야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왜곡할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음
 - 재단은 출자·출연기관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립되며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상이한 두 기관의 설립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서대문구 체육분야 실무자들의 경우 체육재단 설립에 대해 다소 양분된 의견을 보이고 있음
 - 체육재단을 찬성하는 경우 서대문구 생활체육활성화를 기대하는 측면이 강하나, 반대하는 경우는 체육재단에 대한 구민의 의견 수렴과정의 부재, 벤치마킹할 만한 사례가 없음으로 인해 기대효과에 대한 검토가 어려운 것을 지적하고 있음
- 서대문구 문화예술분야 실무자들은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 강력하게 찬성하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 문화재단이 없는 3개 자치구 중 하나로 서대문구가 있다는 점과, 서대문구의 문화예술 행사, 축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사·관광자원들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 컨트롤 타워 기능의 기관 설립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제 7 장

서대문구 생활체육·문화예술 정책 제언

1절 종합 분석

2절 기본방향 및 주요 고려 요소

3절 정책 제언

4절 결론

Ⅶ. 서대문구 생활체육·문화예술 정책 제안

1. 종합 분석

가. SWOT 분석

☐ 강점(Strength)

- 자연환경, 역사자원, 대학가 등 권역별 특성이 뚜렷
- 역사문화, 청년문화 등 풍부한 역사문화자원
- 낙후지역 재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

☐ 약점(Weakness)

- 통합적 생활체육·문화예술계획 부재
- 낮은 문화예산으로 인하여 출연재단의 설립에 대한 부정적 여론
- 재개발 가속화 속 외부 주민 유입으로 정체성 상실과 난개발 우려

☐ 기회(Opportunity)

- 가재울·북아현 뉴타운, 홍제균형발전지구 지정, 강북횡단선, 서부경전철 등 신성장 동력
- 기초단위 생활체육·문화예술의정책적 확대
- 고유한 지역의 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

☐ 위협(Threat)

- 노후화된 주택과 재개발에 추진의 불확실성 대한 불안감
- 생활 및 일상문화에 대한 고려가 결여된 동시다발적 재개발 난립으로 인한 주거 불안감 상승
- 인구 감소와 고령화

나. 발전방안 및 제언

☐ 강점-기회(SO)전략

- 역사문화, 생태를 이용한 생활체육 및 관광, 대학가, 주거지 등 권역별 특화성화 및 문화적 연계로 정주가치 기반 미래도시 지향

☐ 약점-기회(WO)전략

- 서대문구 특화 생활체육·문화예술정책개발, 서대문구 정체성을 담은 생활체육·문화예술거점 확대

☐ 강점-위협(ST)전략

- 사회적경제, 창의인력, 문화적 혁신 등 창조적 역량 등을 집적, 확산하는 서대문구 특화 생활체육·문화예술생태계 기반 조성

☐ 약점-위협(WT)전략

- 서대문구의 풍부한 문화적 자원에 기반한 생활권 단위 생활체육·문화예술사업 전개로 구민의 삶의 질 개선, 도시 활력 증진

2. 기본방향 및 주요 고려 요소

가. 공공기관 설립의 기본방향

1) 서대문구 생활체육 및 문화예술 공공기관의 필요성

- 서대문구는 서울특별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철 2·5·6호선 등이 지나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안산, 인왕산, 백련산 등 자연생태환경이 우수하여 살기 좋은 주거지, 그리고 9개의 대학이 집중되어 있는 대학 중심 도시로서 성장해왔음
- 그러나 대표 산업의 부재, 인구 감소와 인구의 노령화 추세, 도시 곳곳의 재개발 그리고 개발 지역과 노후 지역 간의 불균형 현상 등 도심 쇠퇴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최근 ‘일·생활 균형’을 추구하는 현상이 우세함에 따라 서대문구민들의 삶의 질과 정주 가치를 높이고, 서대문구에 선재해 있는 문화예술·청년(대학문화)·자연생태·역사문화 등을 연계한 창의적, 혁신적인 사업들을 전개하여 지속적으로 서대문구의 가치와 역량을 높여 나감으로써 도시발전의 새로운 전환을 선도하는 전문 공공행정기관이 필요함

2) 생활체육·문화예술 공공기관 설립의 방향

- 구민이 참여, 주도하는 생활 밀착형 생활체육·문화예술 생태계 구축
- 생활체육·문화예술 자원이 풍부하지만, 구민의 일상생활 속 생활체육·문화예술 활동 및 매개 지원이 활발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향유와 참여가 다소 미비함

- 전문적 생활체육·문화예술 기관 설립과 운영을 통해 구민이 참여, 주도하는 생활체육·문화예술 생태계를 구축하고 구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체육·문화예술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자연과 역사, 생활체육, 문화예술, 청년(대학)문화 등 풍부한 지역 자산의 활용과 확산
 - 서대문구가 보유한 다양한 역사자원, 자연생태자원, 생활체육·문화예술인 및 단체, 9개 대학의 청년문화 자산 등이 풍부하게 분포 중이며 다양한 창의 인력들이 활동 중임
 - 이러한 지역 자산을 활용, 확산하는 콘텐츠 생산 및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지역의 생활체육·문화예술 역량의 제고가 필요한 실정임
- 지역 내 다양한 생활체육·문화예술 주체 간의 연계, 협력을 견인하는 전문 행정기관
 - 관내에는 서대문 역사박물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서대문체육회,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북아현문화예술센터를 비롯하여, 연세대, 이화여대 등 9개 대학 등 다양한 생활체육·문화예술 주체가 있으나 이들에 대한 연계 및 협력이 부재함
 - 다양한 생활체육·문화예술 및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과 협업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도시 성장과 발전을 주도할 전문 행정기관 운영이 필요함

나. 주요 고려 요소

1) 지역 기반 생태계 구축

☐ 지역 중심 생활체육·문화예술 추진을 체계화

- 지역을 중심으로 국민의 수요와 요구, 지역 내 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체육·문화예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개편

☐ 지역 생활체육·문화예술 공간 및 자원과의 연계를 강화

- 생활권 내 생활체육·문화예술 거점공간 조성으로 지역단위 생활체육·문화예술 생태계 조성 및 일상 속 생활체육·문화예술을 실현
- 지역 문화자원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특색을 반영한 생활체육·문화예술을 확대

☐ 생활체육·문화예술 협력망 활성화

- 중앙과 지역 간, 지역 내 생활체육·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 활성화로 생활체육·문화예술교육 협치기반을 마련

2) 수요자 중심 사업의 다각화

☐ 생애주기별 맞춤형 생활체육·문화예술 사업을 확대

- 생애주기별 인구구조의 변화, 계층별 특성, 지역적 특색 등을 반영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생활체육·문화예술 사업 확대로 보편적 생활체육·문화예술 사업을 실현

□ 소외계층 대상 생활체육·문화예술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 생활체육과 문화예술교육 기회가 부족한 소외계층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교육격차 해소 및 생활체육·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

□ 생활체육·문화예술교육 지원을 다각화

○ 수요자 중심의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의 생활체육·문화예술교육을 추진, 탈 장르 주제교육, 융합교육 등 교육내용의 다양화 및 교육방법의 다각화를 실현

3. 정책 제언

가. 생활체육·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 설립 관련 의견

1) 서대문구 생활체육·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의 역할

- ☐ 창의적·다원적 생활체육·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 및 문화향수 확대를 기대
 - 생활체육과 문화예술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향유를 매개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고 포괄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활기차고 생산적인 서대문구 생활체육·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임
 -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 서대문구민들의 건강지수가 대체로 최하위권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구민들의 건강지수 회복을 위한 건강증진 활동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임
 - 구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향유 중심의 예술활동을 강화할 수 있음
 - 생활체육과 문화예술의 생활화와 참여 확대를 통한 수요자의 니즈를 반영한 차원 높은 생활체육·문화예술 향유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임
- ☐ 시스템화되고 고도화된 전문경영을 통한 지역의 생활체육·문화예술 역량 강화
 - 생활체육 및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적 지원체계를 통해 기존의 단순 일회성, 지역별 안배 형식으로 진행되던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서대문구의 생활체육·문화예술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서대문구 생활체육·문화예술 관련 동호인 및 전문가, 그리고 전국 단위의 동호인 및 전문가들과의 꾸준한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활동을 통해 사업의 공공성 확보뿐만 아니라 서대문구 생활체육·문화예술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임

2) 시설공단 및 지자체 출연 비영리 법인 운영에 대한 제언

☐ 지역 경제활성화 및 성장동력 제공

- 최근 문화재단과 같이 지자체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기관을 통해 지역의 부족한 문화재원을 확보하는 경향성이 뚜렷해지고 있음
- 이러한 중앙 및 광역 지자체의 공모사업에서의 재원확보를 한 경우, 지역 문화재원 확보 측면뿐만 아니라, 해당 공모사업을 담당하는 전문인력 채용으로 이어짐으로 지역의 고용창출 측면에서도 문화재단이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추세임
- 뿐만 아니라 해당 재원을 다시 지역의 생활체육 및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가들에게 재분배 함으로써, 지역의 생활체육·문화예술 활성화와 지역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3) 지자체 직영과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차이

☐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인력 보유에 따른 기관의 전문성 제고

- 지자체 직영인 공단의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체육 및 문화공간에 대한 사업개발에 대한 실험성이 미흡하며, 단순 시설관리 수준으로 정체될 가능성이 높음

- 프로그램 운영 혹은 지원에 있어 해당 분야의 전문성에 대해 취약한 부분이 있어 운영 미숙 혹은 경직된 의사소통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지자체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기관이 운영할 경우, 생활체육·문화 예술분야 전문인력으로 운영 효율성의 극대화 추진이 가능함
- 생활체육·문화예술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전문인력을 통해 시설 및 프로그램 및 연계성을 높임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조직특성에 기인한 운영 효율성 추구

- 시설관리공단은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관리함으로써 지자체의 공공성 확보가 용이하며, 시설을 통합하여 관리하므로 운영관리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음
- 그러나 운영인력의 순환보직으로 인한 운영 관리미숙과 시행착오가 반복적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으며, 장기운영 시 구조의 계층화로 인하여 인건비의 과도한 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순환보직의 경우 사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매해 새로운 사업 진행으로 지역민들에게 관련 정책에 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 기관에 대한 별도의 감시·감독 체계 부족으로 인하여 기관 운영에 대한 비효율성 우려가 있음

□ 다양한 방식의 재원조성을 위한 적극적 활동

- 중앙 및 광역지자체의 공모사업 등으로 부족한 지역 재원을 확보를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생활체육·문화예술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전문인력을 통해 시설 및 프로그램 및 연계성을 높임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지자체가 운영중심 보다는 해당 기관에 대한 감시·감독으로 역할이 전환됨으로써 운영의 기능강화를 기대할 수 있음

나. 비영리 법인 운영에 대한 이슈

1) 지역 생활체육·문화예술 업무에 대한 역할 중복

- 서대문구의 생활체육·문화예술을 수행하는 기존의 서대문구시설관리공단과 서대문문화원 등과의 역할이 중복된다는 우려
- 이는 지역 관련 예산의 ‘파이 나눠먹기’ 혹은 ‘옥상옥’에 대한 우려가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각 기관별 역할분담을 통한 사업 범위 구분을 통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짐
- 문화원의 경우에는 기존 향토문화 발굴 및 지역 원천 콘텐츠 활용에 중점을 둘 수 있을 것이며,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는 기존 공연장 및 전시장만을 비영리 법인으로 시설을 이양하고 나머지 시설관리부분(지역의 공공주차장 및 공원 시설 등)으로 업무를 재배치함으로써 업무 및 역할 중복에 대한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임

2) 비영리 법인 설립 시 신분 변화에 대한 오해와 극복 방안

- 지자체의 생활체육 및 문화예술 관련 사업을 진행해 왔던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비영리 법인 설립 시 기존 직원들의 신분 변화에 대한 우려로 인해 비영리 법인 설립을 반대하는 경우가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지자체장이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충분히 협의점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임

- 공단의 경우, 공무원 신분으로서의 처우 문제와 해당 직원들의 직급 체계에 맞은 타 부서로의 전출이 어려운 현상이 있으나 이러한 문제는 비영리 법인 설립 시 처우문제를 충분히 협상할 수 있을 것이며, 전출문제의 경우에는 새로운 부서를 만듦으로써 이에 대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임

다. 발전 방향

1) 역할 강화

○ 생활체육과 문화예술 서비스의 전달체계로서 지자체 출연 기관은 지자체 조직이 수행할 수 없는 효율성과 효과성을 추구하는 신공공관리 관점을 넘어서 소비자들의 특성을 고려하는 신공공서비스론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음

○ 시민 참여형 지역발전 전략이 발전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참여자로서, 혹은 구심점으로서 지자체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때문에 해당 기관이 협력적 거버넌스의 참여자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설관리공단이 아닌 전문성과 자율성을 갖춘 조직으로 재편성이 필요함

○ 이는 기존의 시설관리기관으로서 바라보던 보수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지역정책개발 및 수행기관으로서 전문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임

2) 지자체 출연 비영리 기관 기준 요건 명시 필요

- 기초지자체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기관의 경우 지자체 출연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을 가져야 하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또한 이에 걸맞는 공공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지자체 행정은 물론, 여타 지자체 공공기관의 공신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자체 출연기관으로서 최소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지자체 내의 제도적 혹은 내용적 합의가 필요함
- 지자체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물적, 인적자원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지자체의 투자 의무를 조례에 반영해야 할 것임

3) 시설 운영 및 관련 강좌 사업 고도화

- 다수의 지자체 산하 비영리 법인의 조직 구성 및 사업 내용에서 공연장, 도서관 등 문화시설 운영이나 문화강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이며, 이는 문예회관 및 아트센터 운영의 전문화 형태로 진행되는 사례가 많음
 - 도서관 및 체육시설 운영이 지자체가 출연한 비영리 기관의 사업영역으로 편입되는 경우들이 증가하고 있음
 - 신생 기관이 도서관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으며, 문화강좌 및 체육강좌를 운영하는 경우 문화예술교육과 생활체육이 복합된 형태로 지속되는 경우가 많음
- 지자체 출연기관의 지역정책 수행 제고를 위해서는 공연장, 도서관 등의 기존 시설관리공단이 수행해 왔던 고유의 기능을 넘어서 지역

사회와의 관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체육 및 문화강좌는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적 부담과 비교적 안정된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을 공급함으로써 지역에서 상당한 주민 수요층을 유지하고 있으며, 생활문화정책과 연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나, 이러한 노력이 정책적으로 수행되는 경우는 소수에 머물고 있음
- 공연장 및 도서관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지역문화정책에 대한 지향성이 조화를 이루어 사업의 다각화와 고도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전문성을 확보한 지자체 내 공공기관이 필요한 시점임

4) 조직문화개선 및 인력의 전문성 강화

- 시설 관리 기능을 위한 조직 문화와 더불어 지역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지역의 정책을 개발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문화가 문화재단에 병존하는 상황이므로 사업별 전문인력 확보가 공공기관의 성과와 직결될 수 있음
- 지자체가 출연한 비영리 기관의 역할이 시설관리를 넘어서 지역 정책개발 사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혁신 성과 도출이 예상되는바, 여러 제도 및 체계 도입이 필요함

5) 협력체계 강화

- 대도시 기초지자체는 높은 인구밀도로 인하여 지자체별 인구는 많지만 이웃 지자체와 분리된 개별성이나 독립성은 약해지고 있어 지자체의 체육자원 및 문화자원, 체육대회 및 문화행사의 공유 가능성이 높아지는 추세이므로 지자체간 연계 협력은 불가피한 상황임

-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특성상 서대문구에 거주하더라도 실질적 생활권역은 여러 자치구를 걸쳐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자치구에 존재하는 출연기관 또한 기관별로 운영기간이 다양하게 혼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서대문구에서 출연기관을 설립한다면 비교적 운영기간이 긴 주변 자치구의 기관과 협업 내지는 벤치마킹을 통해 운영 전략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임
- 반면, 서대문구에 출연기관을 설립한다 하더라도 인접 지자체 출연기관과의 경쟁 관계도 존재하고 연계·협력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생활권역 내 공통 이슈(예를 들면, 홍은·홍제권역과 은평구의 생태환경 자원 활용 등) 발굴을 통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임
- 시민들로 구성된 마을운동가들과 서대문구 내의 생활체육·문화예술 향유 증진과 주변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이슈를 개발할 수 있는 관계 강화(예를 들면, 포럼이나 학술대회 등)가 필요하며,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정책 관련 이슈는 ‘시민참여예산제’와 같이 지자체 구청과의 업무계획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6)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수행 증대와 지역균형 차원의 지원 확대

- 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생활체육과 문화예술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비영리 공공기관으로서 지자체 출연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되나, 이의 역할과 관련하여 실제 극복해야 할 현실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임
- 특히 출연기관의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적극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수준이 낮을 것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기관의 자율성을 보장에 대한 지역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라. 지역의 연계·협력 확대

1) 대학과의 연계·협력

□ 서대문구가 보유한 중요한 자산 중 하나인 대학을 활용한 연계·협력 사업의 적극적 추진

- 서대문 체육동호회가 서대문구 소재 대학 운동장을 휴일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연계·협력 방식은 체육동호회 중에서도 축구 동호회 활동으로만 이루어지므로 이와 같은 단순하고 한 분야에만 치우친 형태가 아닌 대학 자원 즉, 청년과 공간을 함께 활용하는 적극적인 연계·협력 방식이 필요함
- 지난 11월 26일 진행된 ‘서대문구·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발전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은 서대문구에 소재한 대학 자산을 활용한 연계·협력의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임
- 그 외에도 최근 이화여자대학교 인근이 급속히 공동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이화여자대학교 학생회 혹은 예술 관련 대학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공간을 문화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방식은 최근 대규모 생활체육·문화예술 인프라를 새롭게 건립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공동화된 유휴공간을 문화적 도시재생을 통해 활용하는 형태로 이미 여러 문화재단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
- 특히 서대문구와 같이 새로운 인프라를 건설할 공간이 없는 지역에서 문화적 도시재생을 통한 문화적 공간 확보 전략은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 될 것임

- 이러한 대학 주변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는 기존의 단순 축제 전문
용역업체 선정을 통한 사업 진행 방식보다는 서대문구의 장점인
청년 기반의 ‘청년 축제 기획단’ 운영 등과 같이 청년을 적극
활용한다면 신촌과 이대 지역의 새로운 청년문화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임

2) 역사문화자원과 자연생태의 통합적 활용 모색

- 서대문구의 대표적 역사자원과 자연생태자원의 통합적 활용을 위한
새로운 루트 탐색

- 서대문구가 자랑하는 안산 자락길, 홍제천 등을 거닐며 마지막
도착지로 영천시장과 독립문을 연결하는 등 서대문구만의 건강
→역사→먹거리로 이어지는 코스 개발을 통해 서대문구 자원 간
통합적 활용에 대한 적극적 모색이 필요함
- 해당 자원 간 코스 사이사이 문화예술적 요소를 포함하여 즐거
움을 선사할 수도 있을 것임
- 그 외에도 해당 코스와 관련하여 다양한 이색 걷기대회와 같은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적 요소를 강조한 사업을 개발하는 등
서대문구 자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수많은 정책
아이디어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결 론

서대문구가 보유한 공공 및 민간의 생활체육·문화예술 시설, 기관, 자연생태자원, 역사문화자원 간 연계·협력을 통한 공동 사업 발굴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너지 창출이 필요함

SW

지역주도 정책개발 및 확산 지원을 위한 전문조직

- 서대문구민의 생활체육·문화예술에 대한 수요와 요구, 관련 지역의 생태계 현황 등에 기반하여 서대문구에 적합한 생활체육·문화예술 정책,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확산을 지원하고 서대문구의 역사·자연자원을 통합적으로 연계 활용을 위한 전문적인 조직이 필요함

생활체육과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 확충의 정책 기조 속에서 서대문구에 적합한 정책개발을 연구를 통한 지속적인 도시발전 전략을 추진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함

Hu

생활체육·문화예술 협력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형성

- 서대문구 내 소재한 다양한 시설 및 공간, 생활체육·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전문인, 대학 등이 참여하는 통합 협의체 형성 및 운영을 통해 지역의 생활체육·문화예술 주체 간의 시너지 효과 창출
- 서대문구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대학의 시설뿐만 아니라 청년자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협력함으로써 서대문구의 신(新) 청년문화 창출

실질적인 지역의 생활체육·문화예술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서대문구의 대표적 특화자원인 대학(청년)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기반을 형성할 필요가 있음

HW

공간과 시설을 연계하고 문화적 접근을 통한 새로운 공간 확보 전략

- 공연장,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공간을 연결하는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이 최근의 추세이므로 이에 맞추어 공간과 공간, 시설과 시설뿐만 아니라 공간과 시설을 연결하기 위한 공간 활용 전략을 추구
- 새로운 생활체육·문화예술 인프라 건립을 위한 과도한 예산 사용보다는 관내 유휴공간을 문화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관내 청년들을 공간 운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

참고문헌 및 부록

참고문헌

설문지

참고문헌

「2023년도 서대문구 일자리대책 세부계획」

「2019년도 서대문구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서」

「2020년도 서대문구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서」

「2021년도 서대문구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서」

「2022년도 서대문구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서」

「2023년도 서대문구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서」

「2020 서대문구 사회조사」

「2020년도 서대문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수 및 수급자수」

「2023년 2/4분기 서울특별시 주민등록인구통계」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 <https://www.sdm.go.kr>

「지역사회 건강통계」,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 <https://chs.kdca.go.kr/chs/main.do>

「2023년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청 홈페이지 : <https://www.kostat.go.kr/ansk/>

「서대문구 공공데이터플랫폼」 홈페이지 : <https://www.sdm.go.kr/sdmbigdata/index.do>

유튜브 홈페이지 : <https://www.youtube.com>

부록 1-정책분야 FGI 설문지

<서대문 생활체육·문화예술 정책개발 연구>를 위한 전문가 FGI 설문

본 설문은 <서대문 생활체육·문화예술 정책개발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이 외의 연구 및 통계자료로 활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구 수행처 : (사)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연구책임

박 현 승

E-mail : chiwoo978@naver.com

Moblie : 010-8931-5496

○ 현재 서대문구는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 체육관련 재단 혹은 문화재단이 없는 자치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본 연구는 서대문구에 <체육문화재단> 혹은 <문화체육재단>을 설립하고자 열망하는 분들의 의견으로 진행되는 연구이기도 합니다. 해당 내용을 숙지 하시고 아래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가급적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그 외 서대문구 현황자료는 연구의 착수보고 자료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질문 1. 현재 체육과 문화예술을 통합하여 운영되고 있는 재단이 있는지 사례에 대해 알고 계시면 해당 사례에 대해 장단점을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혹은 문화재단이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나 체육재단이 문화시설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실제 문화체육재단이 있는 경우 등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시면 모두 작성 부탁드립니다.

질문 2. 서대문구에 “문화체육” 혹은 “체육문화” 재단이 설립되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 반대 혹은 찬성하시는 경우 왜 그러한지에 대해 자세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질문 3. 위 2번 질문에 근거하여 ①재단이 설립된다면 주 사업의 방향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혹은 ②재단 설립이 필요 없다면 서대문구에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 자세한 설명부탁드리며, 해당 기관의 사업방향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질문 4. 서대문구의 체육 및 문화예술 ①현재 여건은 어떠한지, ②현재 가장 큰 문제점(취약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③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인 필요한지 자세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질문 5. 서대문구에 체육재단, 문화재단, 문화체육재단 혹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기관의 핵심가치는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도에 따라 3순위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순위 : 2순위 : 3순위:)

- ①협력 ②생활 ③변화 ④도전 ⑤소통 ⑥공정 ⑦책임
⑧열정 ⑨혁신 ⑩신뢰 ⑪포용

※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2-생활체육분야 FGI 설문지

<서대문 생활체육·문화예술 정책개발 연구>를 위한 전문가 FGI 설문(생활체육분야)

본 설문은 <서대문 생활체육·문화예술 정책개발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이 외의 연구 및 통계자료로 활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구 수행처 : (사)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연구책임

박 현 승

E-mail : chiwoo978@naver.com

Moblie : 010-8931-5496

※ 귀하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주 활동분야는 무엇입니까?

- ①체육 현장 ②체육 정책 ③체육행정 ④체육연구 ⑤기타

3. 귀하의 연령은?

- ①20대 ②30대 ③40대 ④50대 ⑤60대 ⑥60대 이상

4. 귀하의 소속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대학교 ②연구기관 ③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 ④전문체육인 ⑤체육법인
⑥법인이 아닌 체육 관련 사설 단체 ⑦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 다음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생활체육·문화예술 정책개발을 위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생각하는 부분을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5. 서대문구가 보유한 생활체육과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자원을 3가지로 작성해 주시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①
- ②
- ③

→응답이유 :

6. 서대문구의 생활체육 환경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질문에 응답해 주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생활체육을 하기에 매우 좋은 환경이다
- ②생활체육을 하기에 환경이 좋은편에 속한다
- ③보통이다
- ④생활체육 환경이 좋은편은 아니다
- ⑤생활체육 환경이 매우 좋지 않다

→응답이유 :

7. 서대문구가 향후 체육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추진 및 강화해야하는 사업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내용 중 귀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3순위까지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 2순위 : 3순위:)

- ①생활체육센터 등 생활권 체육거점 시설 운영 및 조성
- ②체육시설 및 체육자원간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활성화
- ③서대문구 생활체육인 및 단체의 지원 및 양성
- ④대학가 중심 체육문화 활성화 지원
- ⑤서대문구 생활체육 자산의 체계적 기록 및 활용
- ⑥서대문구 시민 생활체육교육 활성화
- ⑦소외계층 및 지역, 일상 등 생활속 체육문화 향유 지원
- ⑧주민 생활체육동아리/생활체육축제 등 생활체육활동 지원
- ⑨생활체육분야 청년 및 인력 양성 활동 지원
- ⑩기초 거점 생활체육교육센터 운영
- ⑪서대문구 특화 생활체육시설 활성화
- ⑫서대문구 생활체육 정책연구 및 개발
- ⑬구민대상 생활체육 정보 및 홍보 강화
- ⑭구민 생활체육기획단 등 시민 참여 플랫폼 구축

8. 서대문구에 생활체육관련 공공기관 혹은 중간지원조직(예, 서대문구 체육재단)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질문에 응답해 주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매우 필요하다 ②필요하다 ③보통이다
- ④필요없다 ⑤전혀 필요없다

→응답이유 :

9. 서대문구에 생활체육관련 공공기관 혹은 중간지원조직(예, 서대문구 체육재단)이 설립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도에 따라 3순위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순위 : 2순위 : 3순위:)

- ①구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제고
- ②서대문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
- ③서대문구 생활체육 정책 및 사업의 체계적 발전
- ④서대문구 시민대상 생활체육 교육 활성화
- ⑤서대문구 체육관련 시설 간 거버넌스 구축으로 인한 운영 활성화
- ⑥소외계층 대한 생활체육 지원 사업 확대
- ⑦생활체육 전문인력 확보
- ⑧생활체육관련 축제 및 대회 활성화
- ⑨서대문구 생활체육 관련 정보 및 홍보 강화
- ⑩생활체육 동호회 지원 확대

10. 서대문구에 생활체육관련 공공기관 혹은 중간지원조직(예, 서대문구 체육재단)이 설립된다면 해당 기관의 핵심가치는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도에 따라 3순위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순위 : 2순위 : 3순위:)

- ①협력 ②생활 ③변화 ④도전 ⑤소통 ⑥공정 ⑦책임
- ⑧열정 ⑨혁신 ⑩신뢰 ⑪포용

※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3-문화예술분야 FGI 설문지

<서대문 생활체육·문화예술 정책개발 연구>를 위한 전문가 FGI 설문(문화예술분야)

본 설문은 <서대문 생활체육·문화예술 정책개발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이 외의 연구 및 통계자료로 활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구 수행처 : (사)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연구책임

박 현 승

E-mail : chiwoo978@naver.com

Moblie : 010-8931-5496

※ 귀하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주 활동분야는 무엇입니까?

- ①문화예술 현장 ②문화예술정책 ③문화예술행정
④문화예술연구 ⑤기타

3. 귀하의 연령은?

- ①20대 ②30대 ③40대 ④50대 ⑤60대 ⑥60대 이상

4. 귀하의 소속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대학교 ②연구기관 ③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 ④전문문화예술인
⑤문화예술법인 ⑥법인이 아닌 문화예술 관련 사설 단체
⑦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 다음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생활체육·문화예술 정책개발을 위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생각하는 부분을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5. 서대문구가 보유한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자원을 3가지로 작성해 주시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①
- ②
- ③

→응답이유 :

6. 서대문구의 문화예술 환경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질문에 응답해 주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문화예술을 하기에 매우 좋은 환경이다
- ②문화예술을 하기에 환경이 좋은편에 속한다
- ③보통이다
- ④문화예술 환경이 좋은편은 아니다
- ⑤문화예술 환경이 매우 좋지 않다

→응답이유 :

7. 서대문구가 향후 문화예술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추진 및 강화해야하는 사업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내용 중 귀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3순위까지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 2순위 : 3순위:)

- ①생활문화센터 등 생활권 문화예술거점 시설 운영 및 조성
- ②문화시설 및 문화자원간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활성화
- ③서대문구 문화예술인 및 단체의 지원 및 양성
- ④대학가 중심 문화예술 및 축제 활성화 지원
- ⑤서대문구 문화예술 자산의 체계적 기록 및 활용
- ⑥서대문구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⑦소외계층 및 지역, 일상 등 생활속 문화예술 향유 지원
- ⑧주민 생활문화동아리/문화예술축제 등 문화예술활동 지원
- ⑨문화예술분야 청년 및 인력 양성 활동 지원
- ⑩기초 거점 문화예술교육센터 운영
- ⑪서대문구 특화 문화예술시설 활성화
- ⑫서대문구 문화예술 정책연구 및 개발
- ⑬구민대상 문화예술 정보 및 홍보 강화
- ⑭구민 문화예술기획단 등 시민 참여 플랫폼 구축

8. 서대문구에 문화예술관련 공공기관 혹은 중간지원조직(예, 서대문구 문화재단)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질문에 응답해 주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매우 필요하다 ②필요하다 ③보통이다
- ④필요없다 ⑤전혀 필요없다

→응답이유 :

9. 서대문구에 문화예술관련 공공기관 혹은 중간지원조직(예, 서대문구 문화재단)이 설립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도에 따라 3순위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순위 : 2순위 : 3순위:)

- ①구민의 문화향유 증진 및 삶의 질 제고
- ②서대문구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
- ③서대문구 문화예술 정책 및 사업의 체계적 발전
- ④서대문구 시민대상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 ⑤서대문구 문화예술 시설 간 거버넌스 구축으로 인한 운영 활성화
- ⑥소외계층 대한 문화예술 지원 사업 확대
- ⑦문화예술 전문인력 확보
- ⑧문화예술관련 축제 및 대회 활성화
- ⑨서대문구 문화예술 관련 정보 및 홍보 강화
- ⑩문화예술 동호회 지원 확대

10. 서대문구에 문화예술관련 공공기관 혹은 중간지원조직(예, 서대문구 문화재단)이 설립된다면 해당 기관의 핵심가치는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도에 따라 3순위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순위 : 2순위 : 3순위:)

- ①협력 ②생활 ③변화 ④도전 ⑤소통 ⑥공정 ⑦책임
- ⑧열정 ⑨혁신 ⑩신뢰 ⑪포용

※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서대문구의회